

INVENTION & PATENT

2012 May

05



INVENTION & PATENT _ Vol. 430

[Focus]

최근 일본과 중국의
지식재산 인재육성 현황

중국 실용신안제도는
활용할 만한 것인가?



Contents

Column

- 14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인정된 특허들은 정말 다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일까?
- 18 도대체 어디까지가 유사상표란 말인가?
- 22 여기서 잠깐 _ 책과의 만남

Report

- 24 유럽에서 컴퓨터 관련(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심사
- 30 최근 일본과 중국의 지식재산 인재육성 현황
- 36 중국 실용신안제도는 활용할 만한 것인가?
- 43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 44 상표권 침해에 대한 eBay의 책임
- 50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고찰
- 57 여기서 잠깐 _ 발명역사 속으로
- 58 통풍을 치료하는 약초와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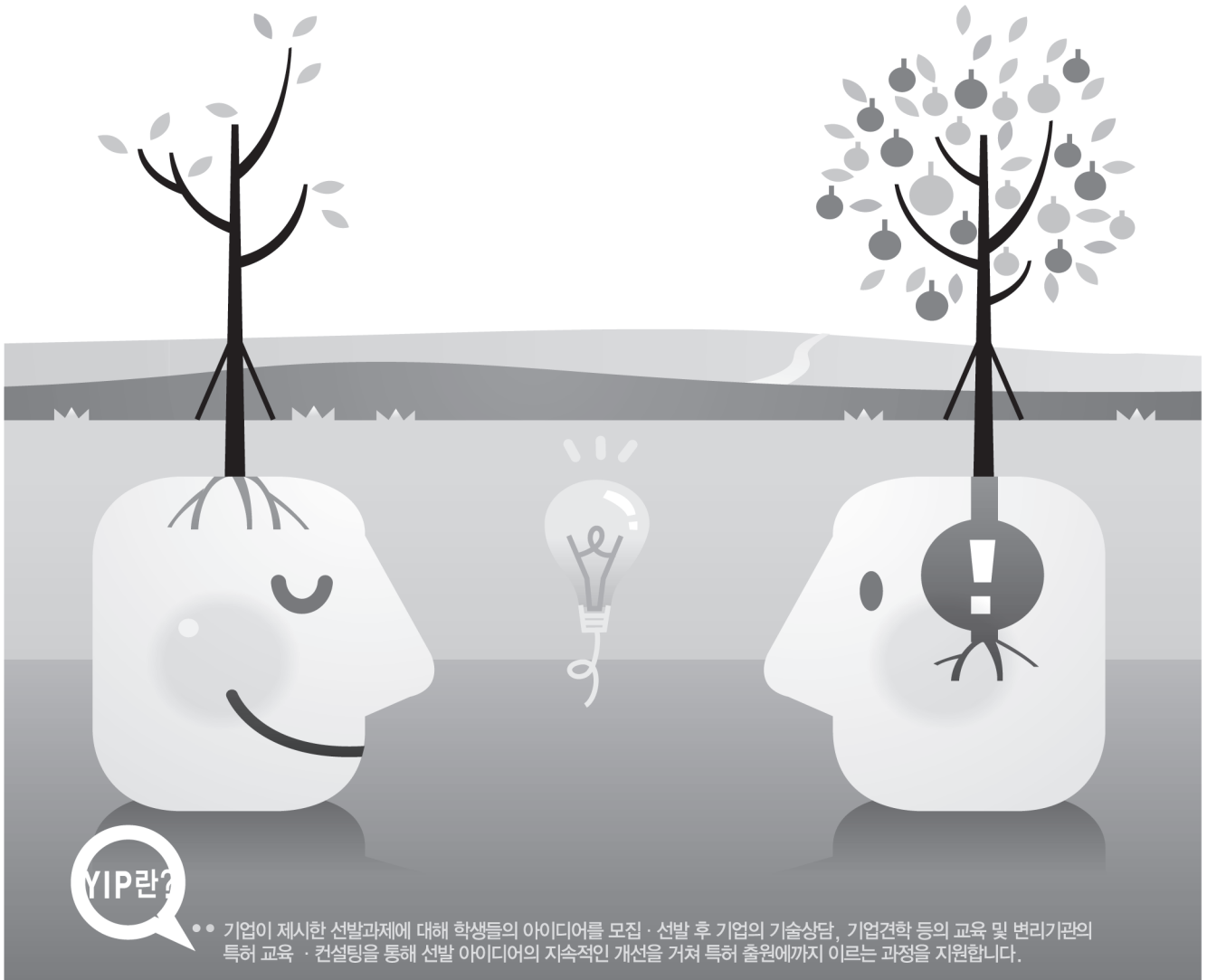
Information

- 64 세계는 지금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 68 KIPO NEWS 특허청 소식
- 71 여기서 잠깐 _ 독자마당
- 72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 74 발명만화 몰래발명이야기 - 립스틱
- 76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고 싶다면 장을 청소하자
- 79 여기서 잠깐 _ 문화산책



2012 YIP Young Inventors Program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신청안내

- 신청 대상 전국 중 · 고등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
* 학제별 학생 3명과 지도교사 1명이 팀을 구성하여 신청
- 신청 방법 YIP전용 홈페이지 (www.yipedu.net)
- 신청 기간 2012년 5월 초 ▶ 6월 중순(예정)

- 선발 규모 50개팀
- 선발 혜택
 - 최종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출원 무료 지원
 - 교육과정 이수자 특허청장 수료증 발급
 - 우수 아이디어 기술 구현 영상 제작 지원

※선발과제 및 결과 발표, 기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신청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02-3459-2718

주최 특허청

주관 한국발명진흥회



아름다운 빛의 근원 SLIM LINE 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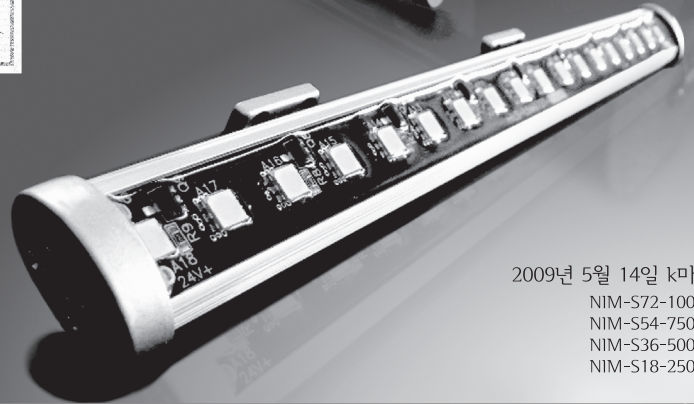
• 설치시공사례



2009년 6월1일 CE마크 선정



1. SMD TYPE LED
2. SLIM & SIMPLE
3. 다양한 각도 조정의 브라켓



2009년 5월 14일 k마크 취득
 NIM-S72-1000-F/WH
 NIM-S54-750-F/WH
 NIM-S36-500-F/WH
 NIM-S18-250-F/WH

2009년 4월 29일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LED 조명등(NIM-CS1.5W-A)
 LED 조명등(NIM-CS6W-A)



0,24W SMD TYPE LED 소자
 R-G-B 3COLOR in 1 chip

어둠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눈동자

LED CLUSTER

• 설치시공사례

대전부리공원

남지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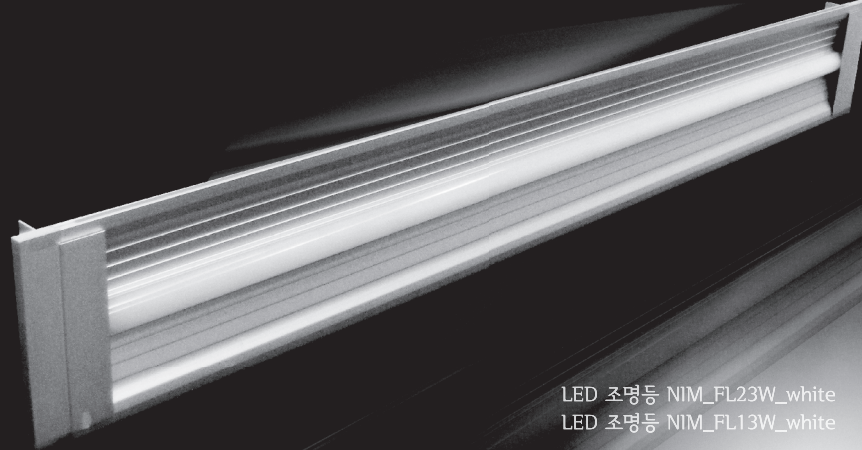
Insertion LED Illuminating Light

• 설치시공사례



일반 형광등은 자외선이 발생하나 매입형 LED등기구에서는 자외선을 방출하지 않으며 연간 30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 중 녹색기술개발 성장동력화에 발맞춘 친환경 제품이다.

ECO FRIENDLY



LED 조명등 NIM_FL23W_white
 LED 조명등 NIM_FL13W_white

www.nuriplan.com

(137-847)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78-34 누리플랜 B/D
 TEL) 02,2679,4100 FAX) 02,3660,4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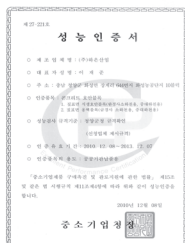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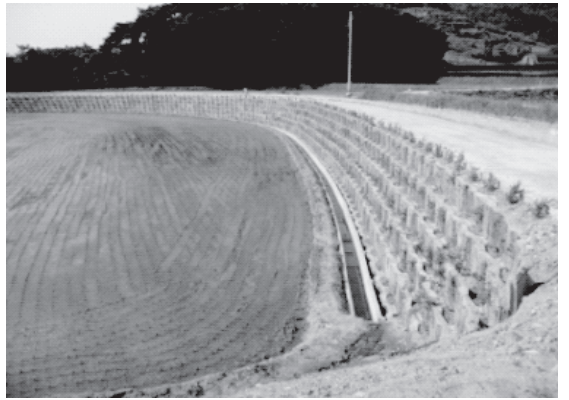
KOSDAQ
 코스닥 상장법인

호안. 축대. 옹벽을 자연환경으로.....

주식회사 하은 산업의 황토색
벚꽃표면 호안, 축대, 옹벽은
대한민국 조달 우수물품입니다.

보유기술및 인증

- ◎ 한국산업규격(KS) 표지 인증 (KS F 4010)
- ◎ QMS 인증(DIN EN ISO 9001 인증)
- ◎ EMS 인증(DIN EN ISO 14001 인증)
- ◎ 신기술 인증 (NET)
- ◎ 유망중소기업지정 (충남도지사)
- ◎ 환경표지인증(호안블록)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청장)
- ◎ 건 마크 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장)
- ◎ K 마크 인증 (한국산업기술원장)
- ◎ 성능 인증 (중소기업청장)
- ◎ 대한민국 ESH가치경영대상(조달청장)
- ◎ 청양군 최고기업인상 수상(청양군수)
- ◎ 우수조달품목 지정(조달청장)
- ◎ 발명특허: 벚꽃층이 부착된 환경친화형
조립식 호안블록외 11건
- ◎ 실용신안: 벚꽃층이 부착된 호안블록
(축대블록)외 9건
- ◎ 디자인등록: 식생호안블록외 14건
- ◎ 해외디자인 등록: 가로수보호의자외 3건



주식회사 하은산업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644화성산업단지 10블럭

TEL041)942-8523~4 FAX041)942-8525

http: www.juhaeun.co.kr E-mail: juhaeun@hanmir.com

"아이디어가 선풍타격기
되어 드립니다."



기업과 종업원의 win-win.

직무발명제도

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 직무발명제도란?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요?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유발하고,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와 기술 축적 및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직무발명제도는 어떻게 도입 하나요?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종업원이 합의 하여 기업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정하면 됩니다.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직무발명 도입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찾아가는 직무발명 제도 교육」을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발명제도 열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마당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의 사업안내

■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3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



대학창의발명대회

상상을 현실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추진목적

대학 사회에 발명과 특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양성, 우수 졸업 작품 등 대학(원)생 연구성과의 권리화·사업화 지원

참가자격

국내 대학(교)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구분	참가방법	지도교수	기타
발명연구부문	팀(2~3명)	필수	※ Post Doc 제외
발명특허부문	팀(2~3명)또는 개인		※ Post Doc 참가 가능
발명공모부문			

경진부문

발명연구부문(신청기간 : 4.5~5.22, 발명제안서 제출)

- 아이디어를 발명제안 형식으로 제출한 후 교육과 연구를 거쳐 발명으로 완성하는 부문

* 1차 선발 180팀 발명교육, 2차선발 60팀은 시작품 제작 등을 위한 발명연구비(150만원 한도) 지원

발명특허부문(신청기간 : 8.2~9.13, 발명신고서 제출)

- 교내활동(졸업작품·논문, 개인발명 등)을 통하여 완성된 발명을 특허출원서 형식으로 제출한 후 우수한 발명을 선정하는 부문

* 심사 후 선정된 40개 팀 시작품 제작비(80만원 한도) 지원

발명공모부문 (신청기간 : 8.2~9.13, 과제해결서 제출)

- 공모기업이 출제하는 발명과제를 해결하는 부문

- 공모과제

중앙방수기업 : 기존 방수공사 관련 특허의 기능개선 또는 신제품, 신공법 개발 아이디어

한경희 생활과학 : 대기업을 백색가전을 제외한 생활가전과 이미용가전의 새로운 기능 또는 신제품 아이디어

LS산전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량시스템

* 심사 후 선정된 20개 팀은 시작품 제작비 지원(80만원 한도)

경진부문 모두 기업체 지원에 의한 성과물은 제외

경진부문 복수신청 가능하며, 1인당 신청건수 제한 없음

시상내역(총상금 1억3천5백만원)

- ▶ 학생부문 : 국무총리상등 1억 5백만원
- ▶ 지도교수부문 : 과총회장상 1천 6백만원
- ▶ 발명동아리부문 :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등 1천 4백만원

수상자특전

- ▶ 발명연구부문 1차 통과작 무료발명특허교육 2박 3일(6월말,예정)
- ▶ 우수상 이상 수상작 국내출원비 지원
- ▶ 대상수상발명 국제발명전시회 출품지원

대회홈페이지 : www.inventkorea.org

문의 : 02-3459-2798, 02-3459-2794

idea

주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특허청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MKE 지식경제부 대한금속재료학회 KSMI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KCS 대한화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대한화학학회 KOVA (사)벤처기업협회

협찬 : HUROM SLOW JUICER 중앙방수기업주식회사 HAAN 한경희생활과학 LS산전



twitter.com/inventkorea



2012 지식재산 인재양성 컨퍼런스

추진목적

- 그간의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 및 교육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전략 모색
-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 및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협력의 강화 도모

행사개요

- 일 시 : '12. 6. 14(목), 10:30 ~ 18:00,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서울) 7층 두베홀
- 주 최 : 특허청 · 카이스트 · 홍익대 · 인하대 · 전남대 · 강원대
- 주 관 : 한국발명진흥회
- 후 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발명교육학회, 한국대학발명협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KINPA
- 참석대상 : 대학(원) 지식재산 담당 교수 및 강사, 지식재산 교육에 관심있는 자 등 200명 내외
- 내 용 : 정책, 대학교육, 해외사례 등 3개 부문으로 7시간 30분간 진행(중식포함)

<지식재산 인재양성 컨퍼런스 세부일정(안)>

구분	시간	주제	주관(안)
Part 1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추진 전략	10:30~10:35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10:35~10:45	내빈축사	지식재산위원장 특허청장 공대학장협의회장
	10:45~10:55	지식재산 교육대상 시상	지식재산위원장 특허청장
	10:55~11:25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 현주소	특허청
	11:25~11:55	기업에서 바라는 지식재산 인재상	KINPA
휴식	11:55~13:00	점심식사	
Part 2 지식재산 인재양성 교육발전 방안	13:00~13:20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교육의 성과와 방향	카이스트
	13:20~13:40	대학의 지식재산 및 발명특허 교육 현실과 발전방안	선도대학(전남대)
	13:40~14:00	융합형 지식재산교육	지식재산연구원
	14:00~14:20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역량강화 프로그램 현황 및 발전방안	스트라베이스
	14:20~15:00	질의응답 및 토론	좌장
휴식	15:00~15:20	Coffee Break	
Part 3 해외 사례	15:20~16:00	일본의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 및 교육	초빙(홍익대)
	16:00~16:40	미국의 지식재산교육 현황 및 사례	초빙(카이스트)
	16:40~17:20	유럽의 지식재산 인재양성교육 현황 및 사례	초빙(홍익대)
	17:20~18:00	중국의 지식재산 인재양성 정책 및 교육	초빙(홍익대)

※ 해외 전문가 초빙 관련은 현재 섭외 중으로 추후 확정함

대한민국 지식재산 교육대상

■ 목적

-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에 공헌한 교육자를 칭찬·격려하여 지식재산 교육의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지식재산 교육자의 교수사례의 발굴과 공유 등을 통해 지식재산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 역할 모델을 제시

■ 포상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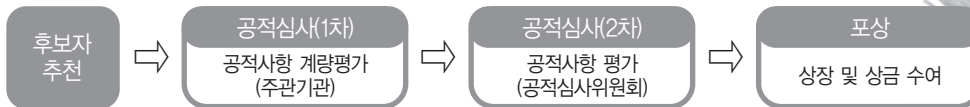
- '대한민국 지식재산교육대상'
 -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 및 '특허청장상' 수여

■ 자격요건 및 선발인원

-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대학(원), 기업,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한 자로서 지식재산 인재양성 교육·활동의 확산과 발전, 대학 발명활동 촉진에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
- 선발인원 : 3명
 -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 : 1명(상금 500만 원)
 - 특허청장상 : 2명(상금 각 400만 원)

■ 수상자 선정 절차

- 포상계획 공고 및 후보자 추천, 2단계 심사를 통하여 결정



■ 대한민국 지식재산교육대상

- '12. 4월 : 포상계획 공고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사업공고 란)
- '12. 4. 23 ~ 5. 18 : 포상 추천·신청 접수
- '12. 6월 : 수상자결정
- '12. 6. 14 : 시상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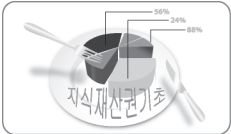
■ 신청방법

- <http://www.kipa.org> ⇒ 신청서 다운 ⇒ 신청서 제출 (공적조서, 공적현황요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
- 문의 및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02)3459-2832



지식재산캠퍼스 5월 교육일정 안내

교육일정



지식재산권기초 2기 (일정: 5/9.수 ~ 5/11.금)

- 지식재산권 초보자를 위한 재미있고 쉬운 첫입문 과정
- 지식재산권 전반의 법률, 제도 및 실무능력 습득과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 제고

▶ 교육비 (회원사)

55만원 (48만원)

▶ 환급 및 지원

노동부 약15% 환급
중소기업대상 특허청 80% 지원



특허침해 감정서 작성 및 손해액 산정 (일정: 5/14.월)

- 특허 침해 감정서 작성 방법과 노하우 전수 등 대리인의 업무 파악을 통한 특허관리능력 향상
- 前특허법원 판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례를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습득, 침해 소송에서의 능동적 대응 강화

▶ 환급 및 지원

18만원 (15만원)

▶ 환급 및 지원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중국특허마스터 과정 (출원~소송) (일정: 5/23.수 ~ 5/25.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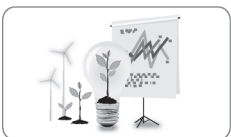
- 특허 침해 감정서 작성 방법과 노하우 전수 등 대리인의 업무 파악을 통한 특허관리능력 향상
- 前특허법원 판사가 직접 알려주는 판례를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습득, 침해 소송에서의 능동적 대응 강화

▶ 환급 및 지원

55만원 (48만원)

▶ 환급 및 지원

노동부 약15% 환급
중소기업대상 특허청 80% 지원



직무발명 제도 및 직무발명 보상평가 (일정: 5/29.화)

- 직무발명 보상 제도에 대한 이해 및 발명자권의 의의 정리
- 보상금 청구 사례를 통한 직무발명 보상금 액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습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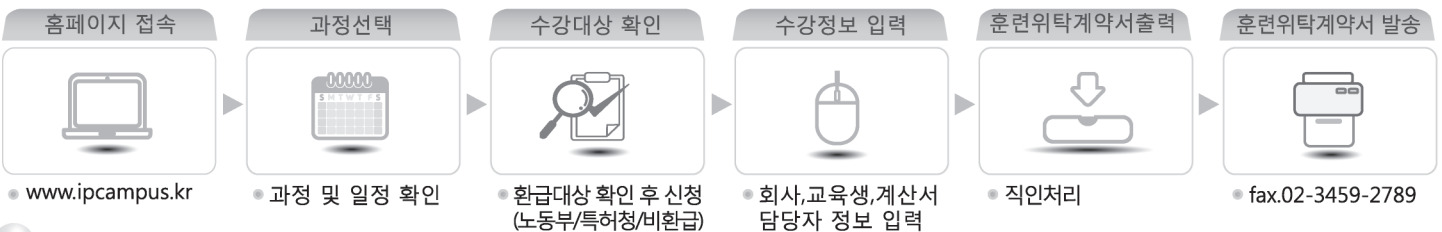
▶ 환급 및 지원

18만원 (15만원)

▶ 환급 및 지원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수강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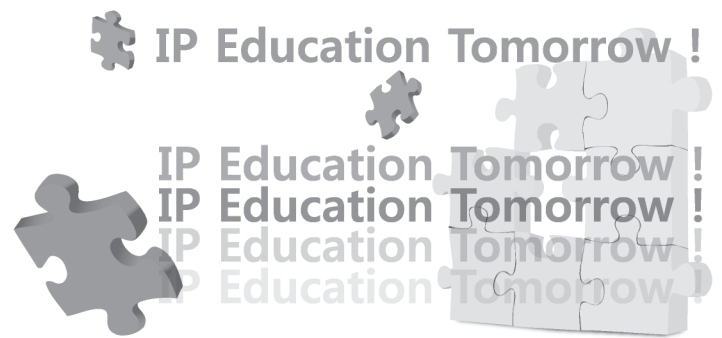


교육비 환급방법

노동부 노동부 교육비 환급 대상: 고용보험가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약20% 대기업 약15% 환급 예상
특허청 특허청 교육비 지원 대상: 중소기업	✓ 교육비의 80% 환급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환급대상 제외)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및 노동부 중복 환급 적용불가

자세한 사항은 www.ipcampu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 지식재산캠퍼스 연간 교육일정

▶ 지재권 일반과정

✳ 특허청 80%지원, 노동부 약 15%환급

NO	일자	강좌명
1	02.08 ~ 02.10	지식재산권 기초 1기
2	02.15 ~ 02.17	디자인-저작권 이해 및 실무 1기
3	02.22 ~ 02.24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침해판단 1기
4	03.14 ~ 03.16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1기
5	03.21 ~ 03.23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
6	03.28 ~ 03.30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1기
7	04.04 ~ 04.06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1기
8	04.25 ~ 04.27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1기
9	05.09 ~ 05.11	지식재산권 기초 2기
10	05.23 ~ 05.25	중국특허 마스터 과정(출원~소송)
11	06.05 ~ 06.08	디자인·저작권 이해 및 실무 2기
12	06.13 ~ 06.15	지식재산 번역(한-중)
13	06.20 ~ 06.22	미국특허 마스터 과정(출원OA)
14	08.22 ~ 08.24	지식재산권 기초 3기
15	08.29 ~ 08.31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2기
16	09.05 ~ 09.07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침해판단 2기
17	09.12 ~ 09.14	지식재산 번역(한-미) 2기
18	09.19 ~ 09.21	특허평가 및 라이선싱 계약 2기
19	09.26 ~ 09.28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
20	10.10 ~ 10.12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2기
21	10.24 ~ 10.26	유럽특허 마스터 과정(출원~소송)
22	10.31 ~ 11.02	미국특허 마스터 과정(분쟁소송)
23	11.07 ~ 11.09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2기
24	11.14 ~ 11.16	지식재산권 기초 4기

▶ 지재권 특별과정

✳ 특허청 80%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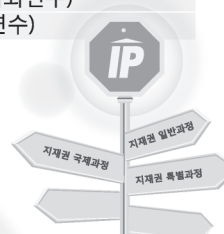
NO	일자	강좌명
1	02.28	한-미,한-EU FTA 이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2	04.17	수출입시 꼭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 실무
3	04.19	Patent Troll 대응 및 단계별 특허분쟁 대응요령
4	05.03	특허침해 감정서 작성 및 손해액 산정
5	05.29	직무발명 제도 및 직무발명 보상평가
6	06.26	영업비밀 관리 및 부정경쟁 방지 실무
7	06.28	특허 소송시 변론능력 SKILL UP
8	09.25	연구노트와 발명신고서 작성법
9	10.02	단계별 특허비용 및 기일 관리전략
10	10.05	영문 지재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11	10.17	심사관과 함께하는 명세서 클리닉
12	11.22	올해의 판례동향 특허, 디자인
13	11.23	올해의 판례동향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 지재권 국제과정

NO	일자	강좌명
1	03.08 ~ 05.22	PADIAS* (해외강사 국내초청 강의)
2	7월 중	지식재산 실크로드_EUROPE (해외연수)
3	8월 중	지식재산 실크로드_USA (해외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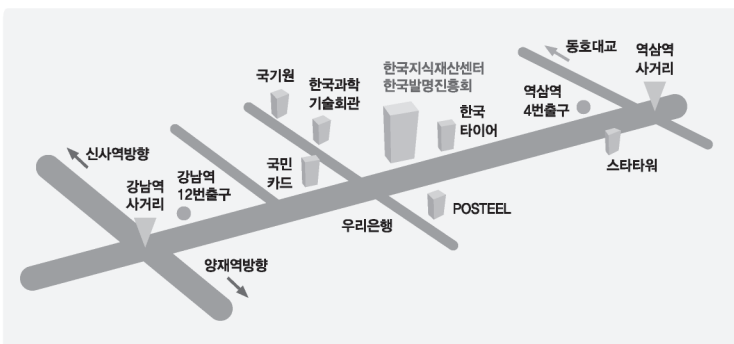
- 상기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노동부(고용보험 가입대상자):교육비의 약 15% 환급
 - 특허청(중소기업 대상):교육비의 80% 환급
 - 특허청 예산 소진시 교육비 지원 조기마감 가능
 - 환급중복 지원 불가, 특허청 지원 대상자 회원사 할인 제외

* PADIAS : Patent Application Drafting and Infringement Avoidance Strategies (미국 특허출원서 작성 및 침해회피 전략)실무 과정



오시는 길

교육장 안내



▲ 제1교육장

▲ 제2교육장

▲ 교육생 휴게실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신규 고등학교 선정계획 안내

특허청에서는 발명·특허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신규 특성화 고등학교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 목적

- 발명·특허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 신규선정 개요

- 선정 학교수 : 3개 학교
- 신청자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 고등학교 중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 *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예정 금액 : 학교당 매년 1.8억 원 내외, 총 5년간 ('13~'17년) 지원
 - * '18년 이후에는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은 예산지원 없는 승인제로 전환 예정

■ 사업 내용

▶ 지원 조건

- 공업계(기계, 전자 등) 전문교과 과정에 발명·특허 교육을 필수 교과 과정으로 이수하는 학교단위 전체특성화
 - 필수 교과 : 발명특허기초(4단위), 발명과 문제해결(4단위), 특허정보 조사분석(4단위)
 - * '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 필수 교과는 정규교과로 3학년 1학기까지 이수 완료해야 함(단, '발명과 문제해결'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가능)

▶ 교육과정 내용(예시)

- 산학협력을 통한 교내 발명경진대회 운영으로 취업률 제고
- 발명동아리 운영, 발명·창의성 대회 참가로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능력 제고
- 특성화 교과목 관련 직무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
 - 지역교육청과 연계한 발명·특허 교육의 거점학교 역할 수행 등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기간 : '12. 4. 23(월) ~ 5. 18(금) 18:00까지(우편 도착 기준)
- 제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 *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평가 및 선정 절차

- ① 서면평가 : '12. 5. 23(수)
- ② 현장실태조사 : '12. 5. 29(화) ~ 6. 8(금)
- ③ 발표평가 : '12. 6. 13(수)
- ④ 지원대상학교 선정 발표 : '12. 6. 29(금) 예정
 -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 개별통보

■ 문의처

- 주관부처 : 특허청 창의발명교육과(042-601-4389, eutteum9@kipo.go.kr)
- 전담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02-3459-2754, jeonjr@kipo.org)

사업계획서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및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에서 다운로드



2012 피츠버그 국제발명품 전시회 모집안내

전시명

- 2012 피츠버그국제발명품 및 신제품 전시회
INPEX 2012 (INVENTION & NEW PRODUCT EXPOSITION)

기 간

- 2012. 6. 13(수) ~ 6. 15(금) [3일간] * 6. 12(화) 부스설치

장 소

- 미국 피츠버그 The Monroeville Convention Center

규 모

- 18개국 365여점 (2011년)

주 최

- ISC(Invention Submission Corporation)

모집기간

- 2012. 5. 2 (수)~ 2012. 5. 25 (금)

참가비용

- 직접 : 920만 원, 위탁 : 510만 원

문의처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18층 발명진흥팀 유동환 주임
Tel : (02)3459-2843 / Fax : (02)3459-2799
E-mail : danny@kipa.org





2012년 제2회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안내

사업 개요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지원 대상

- (신청자격)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 전용실시권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규모) 30건 내외
- (지원한도)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최대 5천만 원 한도 * VAT는 신청인 부담
- (지원내용)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 「특허기술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함
 -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 2012년 11월 15일까지 특허기술평가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특허기술에 한하여 지원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 ① 사업공고 및 접수 → ② 지원대상 선정 → ③ 계약체결 → ④ 평가수행 및 특허기술평가보고서 작성지원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2. 4. 30(월) ~ 5. 29(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www.kipa.org → 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온라인)
 - 제출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및 평가비용견적서
 - ※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비용견적서”를 필히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9개)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932, 2934, 2940)



Column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인정된 특허들은 정말 다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유사상표란 말인가?

여기서 잠깐 _ 책과의 만남

Column

특허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인정된 특허들은 정말 다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일까?

개그콘서트를 통해서 본 특허요건의 고찰

요즘 무한도전이나 1박2일과 같은 예능프로그램들이 방송사 파업으로 그 인기가 주춤하고 있는 동안, 압도적인 시청률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은 단연 개그콘서트라고 할 수 있다. 개그콘서트는 다수의 관객들이 참여하는 대형 콘서트 홀에서 개그맨들이 짧은 썰미 코너를 매주마다 공연하는 공개 창작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개그콘서트는 1999년 9월 4일 첫 전파를 탄 이후, 대한민국 코미디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방영되고 있다. 10년이 넘도록 방영되면서 많은 스타를 배출하였고, 많은 유행어도 만들어 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유행어의 3분의 2는 전부 개콘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개그콘서트에서 요즘 새롭게 방영되고 있는 코너가 있다. 바로 “이기적인 특허소”라는 코너이다. 특허업계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 웬만해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들을 수 없는 단어인 ‘특허’가 들어가는 코너명에 귀가 번쩍하며 관심이 가게 되었다. “이기적인 특허소” 코너가 다른 인기 코너인 “애정남”, “사마



귀유치원”, “찍기도” 등보다 재미나 인기 면에서 아직은 못할 게 사실이지만,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직업병 내지는 인지상정인 것 같다.

“이기적인 특허소”의 프로그램 포맷은 이렇다. 등장하는 인물들 한 가운데 특허 등록 여부를 판단해주는 재판관 한명이 앉아 있고, 양쪽에는 애플의 CEO였던 고 스티브잡스를 패러디한 인물과 국내 S전자 임원을 상징하는 듯한 인물이 각각 앉아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특허 내겠다고 하며, 각종 기발한 발명들로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다.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제안되는 특허발명들은 다양하다. 사람의 특정한 기분이나 감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분노특허’, ‘기쁨특허’, ‘황당특허’, ‘당황특허’ 등이 있고, 새로운 유행어에 대한 ‘유행어 특허’도 있다. 아직 특정한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에 대한 기발한 이름을 짓는 ‘이름 특허’도 있으며, 기발한 신제품에 대한 ‘신제품 특허’도 있다. 이기적인 특허소 가운데 앉아 있는 재판관은 양쪽에서 설사 없이 제안되는 새로운 특허들에 대해, 웃기고 기발하기만 하면 “특허 인정합니다”라고 하면서 특허를 수여해준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제안되는 아이디어들은 진짜로 현행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실제로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제안되는 아이디어들 거의 대부분은 현행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나오는 발명들을 중심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 특허요건에 대하여 한편 살펴보도록 하자.

특허법의 보호 대상 - 발명

특허법 제1조에 의하면 특허는 발명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명은 무엇인가? 특허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발명은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고, 2)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며, 3) 창작이어야 하고, 4) 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심사기준에 의하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것(무한 영구 동력기관, 자연법칙 그 자체 등), 기술적 사상이 아닌 것(미술작품 등, 단순 영업 방법 등)은 특허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등장하는 각종 “분노특허”, “기쁨특허”, “황당특허”와 같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웃기는 상황들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기술적 사상도 아니기 때문에 발명이 아닐 것이고, 그래서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아닐 것이다. 즉, 특허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일상 생활의 상황들을 모두 특허받아 놓고 독점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아마도 지구 상에 있는 사람들의 열에 여덟, 아홉은 모두 특허권 침해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유행어 특허”나 “이름 특허”는 어떨까? 이들 특허 역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기술적 사상도 아니어서 발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발한 유행어나 물건의 이름은 전혀 그 창작성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물건의 새로운 이름은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기적인 특허소”에서는 식빵

을 담은 봉지의 입구를 봉해서 고정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납작한 고정수단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고 묻는다. 아직 그 명칭이 마땅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물건이다. 개그맨 박영진은 그 고정수단의 새로운 이름을 “빵꼬또꼬”라고 짓는다. 그 이유는 그 고정수단의 기능이 “빵떡꼬, 또 묶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기발하다. 그러면서 그 이름에 대한 이름 특허를 내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의 명칭은 특허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상표권의 보호 대상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빵꼬또꼬”의 원래 아이디어를 제공해줬을 것을 생각되는 “빵꾸똥꾸”라는 명칭은 상표 검색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이미 상표출원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류, 서적, 광고업 등에 지정이 되어 있었다.

번호	권리인	출원(국제동시출원) 출원(국제동시출원)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 주장일자	상대 상품분류	도항코드	출원인	대리인	명칭	전문
1	빵꾸똥꾸	4020110040295 (2011.07.25)	4020110090321 (2011.12.05)			광고	25			빵꾸똥꾸	
2	빵꾸똥꾸	4020110030802 (2010.02.12)	4020110011036 (2011.02.21)			포기	16			빵꾸똥꾸	
3	빵꾸똥꾸	4020110039435 (2011.07.20)				출원	16			빵꾸똥꾸	
4	빵꾸똥꾸	4120110022901 (2011.07.28)				출원	35			빵꾸똥꾸	
5	빵꾸똥꾸	4120090029829 (2009.12.07)	412011009592 (2011.02.16)			포기	41			빵꾸똥꾸	

만약, 개그맨 박영진이 특허출원이 아닌 상표출원을 식품 관련 음식 제품에 “빵꼬또꼬”로 출원을 하면 상표권으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또, 동그란 너트 형상의 라이터 부싯돌 부품의 명칭 역시 “물레방아처럼 생긴 불을 키는 도구”라는 의미로 “물레방아”라고 지었는데, 이 역시 특허가 아닌 상표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유행어는 어떨까? 개그맨 박성광이 즐기차게 밀고 있는 유행어 “생각 생각 생각 좀 하고 말해” 같은 유행어 역시 특허로는 같은 이유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행어가 상품에 사용되어 상품의 출처 식별표지로 사용된다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표도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박성광의 유행어 “생각 생각 생각 좀 하고 말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구어체의 표어 같은 것들)에 해당하여 상표권으로도 등록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품 특허

그렇다면,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나오는 특허 중에서 실제로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은 신제품 특허 정도에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나오는 특허들은 상당히 기발하여 변리사인 필자가 보더라도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 많았다.

예를 들면, 바지의 엉덩이 부분에 의자의 받침판을 붙이고, 의자 다리는 접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의자를 만들어서 앉을 수 있는 의자 바지를 들 수 있다. 특허로 등록 받으려면,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신규성이란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특허출원 전에 세상에 알려지고 공개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고, 진보성이란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특허출원 전에 세상에 알려지고 공개된 발명들로부터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발명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나오는 신제품 특허들을 보면, 1) 지루한 직장상사와의 회의 시간에 핸드폰으로 판짓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고안된 자켓 소매에 모형 손을 구비한 “저 열심히 회의 중이에요 자켓”, 2)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을 때 서서 가면서도 쉴 수 있도록 자켓 상단에 걸고리를 구비한 “아따 나 좀 쉽시다 자



켓”,

3)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을 위하여 겨드랑이 부분에 선풍기를 구비한 일명 “put your hands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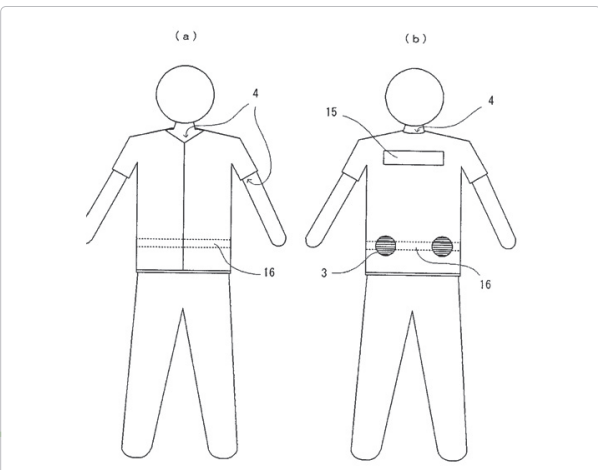
등이 있는데,

그런데, 간단한 특허 검색을 해보니 3번의 일명 “put your hands up” 자켓은 일본의 한 회사에 의하여 이미 유사한 발명이 특허출원 되어 있었다. 이 경우, 앞에서 설명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발한 이기적인 특허소의 신제품 특허가 나온 것을 보고 시청자 중 누군가가 모방하여 특허출원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그 모방한 시청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발명 내용이 이미 방송을 통하여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기적인 특허소를 통해서 공개된 신제품 특허는 오로지 그 신제품을 발명한 이기적인 특허소의 출연진만이 특허받을 수 있다. 특허법은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먼저 공개한 발명자 본인에 한해서 공개 후 6개월 이내 특허출원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이다. 이를 공지예외주장 제도라고 하는데, 논문 발표나 신제품 출시를 먼저 한 발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나오는 각종 특허들은 현행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으며, 보호를 받더라도 특허가 아닌 상표권과 같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어찌됐든, 개그콘서트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특허와 같은 딱딱한 내용이 개그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계속해서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우리들을 즐겁게 해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2012. 5 |



「2탄」

도대체 어디까지가 유사상표란 말인가?

특허청의 심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본 상표의 칭호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

지 난달 편에 이어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칭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이번 달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표의 칭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상표가 일반수요자 사이에서 ‘칭호’로 전달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칭호’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칭호의 유사 여부는 거래 실제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두 개의 상표를 호칭할 때 두 개의 상표가 구별되어 들리지 않고 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두 개의 상표는 칭호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칭호의 유사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막상 두 개 상표의 칭호가 유사한 지 여부를 대비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가능성들을 고려하고 판단해야 하므로 출원 전에 상표의 칭호 유사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상표를 네이밍하기 전에 또는 출원하기 전에 상표 칭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들을 이하에서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음절 구성 수의 고려

상표의 칭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칭호의 음절 구성 수이다. 즉, 양 상표의 칭호를 구성하는 음절 수가 동일하고, 나머지 발음도 상당히 유사한 수준이라면 양 상표의 칭호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로맨스'라는 상표와 '로망스'라는 상표의 칭호 유사 여부를 대비했을 때 이들 상표의 음절 구성 수가 모두 3음절이고, 두음과 끝음이 공통적이고 중간음이 '맨'과 '망'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예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1999원2092 2000허464 2000후1405(심불)		엑사이트
2009원6388 2010허6935	SILENT	XILENTO
2010원4715 2011허3704 2011후2114(심불)	슈가핀 sugarfun	SUGARPINE [®] 슈가핀!
2011허1524 2008후4684(파기)	지라라	ZARA

첫 음절은 칭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할 때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한다

상표를 구성하는 첫 음절, 즉, 두음이 동일하다면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 상표를 구성하는 음절 수가 같은 경우, 첫 음절까지 같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양 상표의 첫 음절 소리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사한 발음

이 경우에도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건에서 첫 음절이 유사할 때 유사하다고 판단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10원944 2011허1616	KIRA	KIRARA
2007원12680 2009허962 2009후1996(심불)	FOSTER	FORSTEO
2007당3199 2008허9191 2009후1149(상고취하)	장수	장수은

한편, 상기의 예들과 같이 양 상표의 음절 구성 수가 동일하고, 그 앞부분의 음절 발음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들도 있는데 그러한 예는 양 상표의 상이한 부분의 발음이 하나의 상표는 강한 발음인 반면, 다른 상표는 약하게 발음되는 경우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이어 설명하겠다.

강한 발음이나? 약한 발음이나?

발음에는 세게 발음되는 발음으로 파열음인 'ㅋ, ㅌ, ㅍ'와 된소리 발음인 'ㄱ, ㅅ, ㅈ, ㅊ' 발음이 있다. 그에 반해 'ㄴ, ㄹ, ㅇ' 발음은 상당히 부드럽게 발음되는 편으로서 전자의 발음과 후자의 발음은 발음되는 혀

의 위치가 상이하며 청각적으로도 비유사한 청감을 주게 되어 일반수요자들로서는 이러한 발음을 혼동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에 대한 선례는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지정상품/서비스업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등
2002당1363 2002허7841	NIKEA	Nivea
	등록상표의 칭호는 '니케아' 이고, 인용상표의 칭호는 '니베아'로서 양 상표의 음절수와 첫 음절 부분의 소리도 동일하다. 중간 음절이 강하게 발음되는 '케'와 약하게 발음되는 '베'로서 청감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의 칭호는 비유사하다.	
2007원12680 2009허962 2009후1996(심불)	휴마쎄	40-89-012384 HUMATIN
	등록상표의 칭호는 '휴마쎄' 이고, 인용상표의 칭호는 '휴마틴'으로서 양 상표의 음절 수가 동일하고, 앞부분 2음절의 발음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끝음의 발음이 '쎄'와 '틴'으로서 그 청감이 분명히 구별되므로 양 상표의 칭호는 비유사하다.	

칭호 외의 요소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주지성, 상표의 외관 등

최근 이슈간 된 상표 사건 중 수입제품 구매대행업체로 유명한 '코스트코(COSTCO)'가 자사와 거의 비슷한 상표, 서비스표를 출원한 코스탑(COSTOP)에 상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제동을 걸었다. 코스트코 코리아, 프라이스 코스트코 인터내셔널은 올해 4월부터 코스트코와 유사한 상표와 건물을 내세운 창고형 마트 코스탑을 개점하기로 한 삼이홀딩스, 에스이코스탑에 지난 3일 상표·서비스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신청서에서 “코스탑이 출원한 상표·서비스표는 모두 코스트코와 유사하기 때문에 코스트코는 서비스표권 침해 예방 청구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¹⁾

문제가 된 코스탑(COSTOP)과 코스트코(COSTCO)는



칭호 자체만 비교했을 때 '코스탑'은 공통되는 음절은 앞의 두 부분 '코스' 부분이 유사하기는 하나, '코스탑'은 3음절로 구성되고, '코스트코'는 4음절로 구성되며, 뒤의 두 음절이 '탑'과 '트코' 부분으로 상이하여 일견 유사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상표

는 '칭호'의 유사성 여부가 유사 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원칙적으로 상표의 외관, 관념의 유사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COSTOP'의 외관을 살펴보면 주지한 상표인 'COSTCO'와 같이 빨간색의 약간 비스듬한 영어 서체로 구성되어 있고, COSTCO 하단의 파란색 줄이 2개가 함께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주지한 'COSTCO'의 외관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모방이라 보여지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COSTOP으로서의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진다.

결론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특히, 상표의 칭호의 유사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상표 실무를 경험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상표의 외관만 중요시할 뿐이어서 외관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만 있다면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출원을 그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 염려가 있음에도 그대로 사용하여 실제로 상표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게 된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는 의미는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나만이 가짐으로써 그 상표에 화체된 신용과 양질의 이미지를 법적으로 보호 받고자 함이다. 유사상표로 인정된다는 것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실제로 타인의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상표의 등록은 물론이며 그 상표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에게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로 이미지가 전락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법적인 상표의 등록 여부를 떠나서 상표에 대한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상술한 상

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검토하여 자기만의, 독점적 '브랜드'를 창조하여 관리해 나가기 바란다. 2012. 5 |



전 소 정
知心 IP&Company 상표팀 변리사

1) 출처-MK뉴스, 링크-<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16650>

여기서 잠깐



책과의 만남

오픈리더십

셸린 리(Charlene Li)

저자 셸린 리(Charlene Li)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뒤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 부사장을 역임하고, 경영 전략 컨설팅 기업 알티미터그룹(Altimeter Group)을 창립해 리더십·경영전략·마케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분야 전문가로서 소셜 컴퓨팅과 웹 2.0분야에서 큰 목소리를 내온 그녀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로 자주 인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USA투데이>, <ABC뉴스>, <CNN>의 단골 컬럼니스트와 패널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연자로 평가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 조시 버노프(Josh Bernoff)와의 공저로 <그라운드스웰>이 있다.

기득권과 통제를 포기한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

소셜 테크놀로지가 촉발시킨 개방의 물결 속에서 개인과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오픈 리더십』. 이 책은 전작 <그라운드스웰(Groundswell)>을 통해 비즈니스와 소셜 테크놀로지의 결합 및 기업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했던 저자 셸린 리가 소통과 조화를 기치로 한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인 '오픈 리더십'을 제시한 것이다. 오픈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오픈 리더를 원하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조직 성향에 따른 맞춤형 전략과 즉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오픈 리더를 발굴·양성하는 방법도 빠짐없이 설명한다. 더불어 조직이 실제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리스크 극복 방안도 모색한다.



저 자_ 셸린리
출판사_ 한국경제신문사





Report

유럽에서 컴퓨터 관련(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심사

최근 일본과 중국의 지식재산 인재육성 현황

중국 실용신안제도는 활용할 만한 것인가?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상표권 침해에 대한 eBay의 책임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고찰

여기서 잠깐 _ 발명역사 속으로

통풍을 치료하는 약초와 특허

Report



Europe

유럽에서 컴퓨터 관련(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심사

2011년 7월, 한-유럽 자유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가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럽 대상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도 34%나 급증했다고 한다.¹⁾ 또한, 2011년 우리나라 국민이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에 제출한 특허출원은 13,254건으로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5번째로 많다.²⁾ 이 특허출원 건수는 2010년 12,352건에 비하여 약 10%가 증가한 수치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유럽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특허심사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기술분야 중 하나인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유럽의 심사기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제52조는 영업방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 가능한 발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컴퓨터 관련 발명³⁾ 중 영업방법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현재 EPO 심사 및 심판은 EPC 제52조 제3항의 적용을 통해서 발명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as such)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허 가능하다고 한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02년 보도자료를 보면, EPC가 발효한 이래 EPO에 의하여 적어도 3만 건의 소프트웨

어 특허가 특허 허여되었다고 한다.⁴⁾ 그리고 EPC 가맹국은 자국 특허법을 EPC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⁵⁾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EPC 가맹국 중 하나인 영국은 Aerotel/Macrossan 판결 등에서 EPO 심판부와 다른 판단기준⁶⁾을 적용하여 영국 법원과 EPO 심판부 간에 대립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EPO 청장인 Alison Brimelow⁷⁾는 이와 같은 EPC 가맹국 내의 판단차이를 해결하고자 2008년 10월 22일 EPC 제112조 제1항 (b)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를 불특허대상으로 하는 EPC 제52조 규정의 적용에 관한 의견문의⁸⁾를 확대심판부(The Enlarged Board of Appeal)에 하였다. 이에 확대심판부는 2010년 5월 12일 그 답변을 보냈고, 그 이후 유럽 내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특허성(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 논란이 가라앉은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럽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특허심사를 EPC, EPO 심사 실무, EPO 심판부의 심결 사례 등을 통하여 고찰하고 우리나라 특허 실무와 대비하여 살펴보겠다.

EPC에 의한 불특허대상 발명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2조에 발명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⁹⁾ 유럽특허조약인 EPC는 발명의 정의 규정이 없이 EPC 제52조 제2항에 불특허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EPC는 오랜 논의 끝에 1973년 뮌헨 외교 회의(Munich Diplomatic Conference)에서 유럽 내 통일적인 특허심사를 위한 유럽특허 규정으로 형성하여, 1977년 10월 7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¹⁰⁾ EPC 제정 당시,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불특허대상을 규정하게 되었다.¹¹⁾ 그리고 영업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EPC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불특허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EPC 제정 논의과정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프로그램 리스트를 제외하면서도 프로그램의 '구조 또는 알고리즘' 및 '예측할 수 없는 기술'이 제외되지 않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에 그 구체적인 해석을 EPO에 맡기게 되었다.¹²⁾ 따라서 EPC 제52조 제3항은 EPC 제52조 제2항에 열거된 주제 '그 자체(as such)'가 불특허대상이지만,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주제는 특허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그 자체'에 관한 해석을 EPO에 위임하고 있다. EPO는 심사기준과 심결

- 1) <http://m.mk.co.kr/new/index.php?sc=30000001&cm=%C3%87%C3%AC%C2%B5%C3%A5%C2%B6%C3%B3%C3%80%C3%8E&year=2012&no=211823&relatedcode=000010208&TM=V1&PM=M0> (2012. 4. 10. 검색).
- 2) <http://www.epo.org/about-us/office/annual-report/2011/statistics-trends/key-trends.html> (2012. 4. 10. 검색).
- 3)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발명(특허)'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유럽에서는 '컴퓨터 구현 발명(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이라고 부른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하는 용어인 '컴퓨터 관련 발명'을 주로 사용하겠다.
- 4)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MEMO/02/32&format=HTML&aged=1&language=EN&guiLanguage=en> (2012. 4. 1. 검색).
- 5) 독일 특허법 제1조 제3항 및 제4항은 EPC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고 영국 특허법 제1조 제2항도 EPC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 6) Aerotel/Macrossan 판결은 컴퓨터 구현 발명에 대한 특허성(발명의 성립성) 기준으로 기술적 기여(Technical Contribution)의 잣대를 적용하였다.
- 7) Alison Brimelow는 영국 특허청장을 역임하고 2007. 7. 1.부터 2010. 6. 30.까지 제5대 EPO 청장으로 근무했다.
- 8) <http://www.sipt.se/admin/photo/big/Remisser/G308en.pdf> (2012. 3. 31. 검색).
- 9) 특허법 제2조 제1호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10) 1977년 당시 벨기에, 독일(서독),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이 EPC 가맹국이었고, 스웨덴이 1978. 5. 10에 가입하였으며, 2010. 10. 현재 EPC 가맹국은 38개국이다. EPC에 의한 첫 특허출원은 1978. 6. 10에 제출되었다.
- 11) EPC 제52조 제2항은 불특허대상으로 "(a) 발견, 과학의 이론 및 수학적 방법, (b) 미적 창조물, (c) 정신적인 활동, 게임 또는 사업에 관한 것일 계획, 법칙 또는 방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d) 정보의 제시"를 열거하고 있다.

에 의하여 ‘그 자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1995년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¹³⁾이 타결되었고, 이 TRIPs 협정은 직접 EPC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EPC 가맹국에 적용되기 때문에, EPC를 TRIPs 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게 되었다. 특히, TRIPs 협정 제27조 제1항¹⁴⁾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PC 개정 준비작업에서 EPC 제52조 제2항의 불특허대상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국의 의견 일치를 얻었으나, 독일, 프랑스 등은 당시 현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컴퓨터 관련 발명의 보호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특허의 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EPC 제52조 제2항 불특허대상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대신에 EPC 제52조 제1항에 ‘모든 기술 분야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게 되었다. 즉, EPC는 모든 기술분야의 발명이 특허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단 EPC 제52조 제2항에 열거된 사항 그 자체만을 불특허대상으로 하며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은 EPO에 위임하였다. 또한, EPC 규칙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술적 특징(Technical Features)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발명이 보호된다고 하여, 기술적 특성(Tech-

nical Character)이 있는 발명을 특허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확하다.¹⁵⁾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의 정의 규정에서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일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EPC는 발명의 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조문화하지 않고 단지 기술적 특성이 없는 주제를 열거하여 불특허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특허법과 EPC는 영업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발명의 자연법칙 이용성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나 기술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것이다.

EPO의 심사 실무

심사기준

EPO 1985년 심사기준(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은 EPC 제52조의 적용과 관련해서 기술적 기여(Technical Contribution)의 존재 여부에 의하여 발명이 특허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다. 하지만, 영업방법과 컴퓨터관련 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EPO 심판부의 심결¹⁶⁾이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의 존재를 기준으로 특허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2001년 8월 31일 발표된 2001년 심사기준은 이를 반영하여 발명의 특허대상 기준으로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명시하였다.¹⁷⁾ 이후 2007년 7월 12일 발표된 2007년 심사기준은 2000년 12월 외교회의에서 합의된 규정의 개정¹⁸⁾과 EPO 심판부의 심결¹⁹⁾을 반영하여 모든 기술분야를 발명의 대상으로 하고 진보성 판단기준을 추가하였다.²⁰⁾ 2010년 4월 1일에 발표된 2010년 심사기준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심사기준으로 2010년 4월 1일에 발효하는 EPC 규칙(Rules)의 개정²¹⁾에 따른 것이다.²²⁾

아래에서는 2010년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 실무를 살펴보겠다. 우선, 발명의 기재에 대



하여,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발명의 공개라 할 수 없으므로, 컴퓨터 관련 발명은 출원서의 상세한 설명에 플로우 다이어그램(Flow Diagram)이나 다른 보조적 수단을 이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고, 컴퓨터 관련 발명은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다른 프로그램 가능한 장치에 기초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실현된 발명을 말한다. 이 발명은 장치를 동작시키는 방법,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 또는 프로그램 그 자체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²⁴⁾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기본적 고려는 다른 주제의 발명들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EPC 제52조 제2항이 영업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특허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포함한다면 EPC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특허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술적 특성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회로상에서 동작함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적인 기술적 효과인 전기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특성은 통상적인 기술적 효과를 넘어서는 것으로,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업적 처리에서 제어, 물리적 실체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처리, 또는 컴퓨터 자체나 인터페이스에서 내부적 기능수행에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처리의 효율성, 보안, 컴퓨터 자원의 관리, 또는 통신 링크에서 데이터 송신율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일단 컴퓨터 관련 발명이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받으면,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의 심사로 진행된다. 진보성 판단에서는 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과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과제의 해결책이 진보성 판단을 위한 발명의 기술적 기여를 의미한다. 만약, 객관적인 기술적 과제가 없다면 발명의 기술적 기여가 없는 것으로 선행기술²⁵⁾과 비교할 것도 없이 진보성이 부정된다.²⁶⁾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EPO는 2007년 11월에 컴퓨터 구현 영업방법에 주목한 EPO에서 컴퓨터 구현 발명의 심사기준(Examination of 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s at the European Patent Offic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computer-implemented business methods,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이라 한다)²⁷⁾을 공표하여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어떠한 기술적 시사(Technical Implication)가 없는 순수 추상적인 개념만이 EPC 제52조의

- 12) EPO가 ‘그 자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은 심사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 13) 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t_agm0_e.htm (2012. 3. 13. 검색).
- 14) TRIPs 협정 제27조 제1항(“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patents shall be available for any inventions, whether products or processes, in all fields of technology, provided that they are new, involve an inventive step and are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Subject to paragraph 4 of Article 65, paragraph 8 of Article 70 and paragraph 3 of this Article, patents shall be available and patent rights enjoyable without discrimination as to the place of inventio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whether products are imported or locally produced.”)
- 15) EPC 규칙 제42조 제1항 (c)는 “The description shall disclose the invention, as claimed, in such terms that the technical problem, even if not expressly stated as such, and its solution can be understood, and state any advantageous effects of the invention with reference to the background art”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a)는 “The claims shall define the matter for which protection is sought in terms of the technical features of the invention. Wherever appropriate, claims shall contain: (a) a statement indicating the designation of the subject-matter of the invention and those technical features which are necessary for the definition of the claimed subject-matter but which, in combination, form part of the prior art”라고 규정하고 있다.
- 16) Sohei 심결(T769/92, 1994. 5. 31), IBM 심결(T1173/97, 1998. 7. 1.), Philips 심결(T1194/97, 2000. 3. 15.), PBS 심결(T931/95, 2000. 9. 8.).
- 17) http://archive.epo.org/epo/pubs/oj001/10_01/index.htm (2012. 4. 10. 검색).
- 18) EPC 제52조 제1항에 ‘모든 기술 분야에서’라는 문구 추가.
- 19) Richo 심결(T172/03, 2003. 11. 27.), Hitachi 심결(T258/03, 2004. 4. 21.), General Electric 심결(T914/0244, 2005. 7. 12.).
- 20) 이 심사기준은 2007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한다.
- 21) EPC 규칙(Rules) 제36조, 제57조, 제62a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제70a조, 제135조, 제137조, 제161조.
- 22) www.epo.org/patents/law/legal-texts/guidelines.html (2012. 4. 10. 검색).
- 23) 심사기준 Part C, Chapter 2, 4.15 부분.
- 24) IBM 심결(T1173/97, 1998. 7. 1.)

불특허대상이라고 할 것이다.²⁸⁾

우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주제(내용)를 기술적 부분²⁹⁾과 비기술적 부분³⁰⁾으로 분리하는데, 비기술적 부분은 EPC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불특허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술적 특성이 있는 명확한 기술적 부분에 해당한다. 각 부분이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는지 전체적으로(As a whole) 판단한다. 주의할 것은 발명에 비기술적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기술적 특성이 있는 주제는 EPC 제52조 제1항의 발명에 해당하므로 비기술적 부분의 존재에 의하여 바로 발명이 불특허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³¹⁾ 이는 발명이 외관상 비기술적 부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기술적 특성이 있다면, 전체적으로는 기술적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외관상 비기술적인 부분이 명확한 기술적 부분의 물리적 특성을 변화 또는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공개된 발명을 실행하기에 필요한 기술적 고려를 반영하는지를 확인한다. 예를 들면, 정보 콘텐츠(외관상 비기술적인 부분)와 장치(명확한 기술적 부분)를 포함한 발명에서, 정보 콘텐츠가 장치의 동작 중 장치의 기술적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장치의 기술적 기능을 참작하도록 사용된다면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부분이 기술적 특성에 관여하여 기술적 문제의 해결책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부분과 비기술적 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반면, 비기술적 부분이 이처럼 기능을 수행하거나 반영하지 않는다면, 순수 비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방법(외관상 비기술적 부분)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가, 장치의 동작 파라미터를 구성하지 않거나 장치의 물리적/기술적 기능(명확한 기술적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방법(외관상 비기술적 부분)은 순수 비기술적 부분이라 할 것이다. 특히, 컴퓨터 관련 발명 중 불특허대상은 프로그램이 컴퓨터 상에서 동작할 때 항상 나타나는 통상의 기술적 효과를 넘어서는 기술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컴퓨터 프

그램이다.³²⁾

다음으로,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PC 제56조는 기술 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다면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³⁾ 여기서 기술 수준은 EPC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것처럼 공공이 서면이나 구두 설명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발명의 기술 분야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³⁴⁾ 일단, 기술 수준이 확정되면, 특허청구범위의 주제에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찾아 그 주제와 선행기술 간에 동일점과 차이점을 특정한다.

진보성 판단에서 핵심은 발명이 그 기술 수준을 넘어서 이루는 기술적 기여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지 않는 순수 비기술적 부분은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으므로, 주제가 순수 비기술적 측면에서만 선행기술과 다르다면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³⁵⁾

한편, 진보성 판단에서 발명은 객관적인 기술적 과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객관적인 기술적 과제는 통상의 기술자가 현실적인 환경에서 해결하도록 요구받을 개연성이 있는 과제이다. 진보성이 있으려면 선행기술에 비교하여 기술적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순수 비기술적 부분은 객관적 기술적 과제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순수 비기술적 부분에 의하여 진보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종합

종전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성립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으나, 현재 EPO 심사 실무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술적 특성인 추가 기술적 효과(Further Technical Effects)가 있으면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한 후,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기술적 기여가 있는지를 살피는 진보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진보성 심사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 관련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술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체적 하드웨



어(Hardware)를 기재하면 불특허대상에서 벗어나 발명의 성립성을 어렵지 않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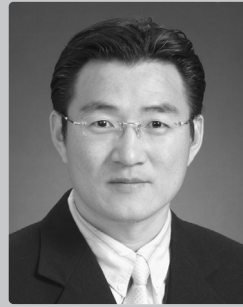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그 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고자, 1984년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컴퓨터 관련 발명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허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³⁶⁾ 이후 1998년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개정³⁷⁾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도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은 미국 특허청이 1996년 2월에, 일본 특허청은 1997년 2월에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특허청구범위 기재대상에 CD-ROM 등 기록매체도 포함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2005년 영업방법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다시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특허 요건과 명세서 기재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하드웨어를 이용한 구체적 실현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임혀져서 하드웨어와 협동하여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EPO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청구범위에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같고,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요건을 심사할 때 발명의 성립성(특허대상인지 여부)보다는 진보성에 의하여 엄격히 심사하는 실무를 보인다.

다음 호에 계속

2012. 5 |



강 흥 정

특허청 컴퓨터심사과장

- 25) 선행기술은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특허 출원일 전에 공지 또는 공용된 기술을 의미한다. 선행기술은 영어로 'Prior Arts' 로 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비교대상발명, 인용참조, 인용 발명 등으로 불린다.
- 26) 심사기준 Part C, Chapter 4, 2.3.6 부분.
- 27) <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2007/11.html> (2012. 4. 10. 검색).
- 28) Hitachi 심결(T258/03, 2004. 4. 21.).
- 29) Technical Aspects.
- 30) Non-technical Aspects.
- 31) Comvik 심결(T641/00, 2002. 9. 26.).
- 32) IBM 심결(T1173/97, 1998. 7. 1.).
- 33) EPC 제56조("An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as involving an inventive step if, having regard to the state of the art, it is not obviou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 34) EPC 제54조 제2항("The state of the art shall be held to comprise everything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by means of a written or oral description, by use, or in any other way, before the date of filing of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 35) Thorn Emi 심결(T294/89, 1990. 10. 25.), Comvik 심결(T641/00, 2002. 9. 26.).
- 36) 1984년 이 심사기준은 일본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 마이크로컴퓨터 응용기술에 관한 발명에 대한 심사 운용지침과 미국의 “심사기준(MPEP)”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1984. 11. 1에 工業所有權 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한 것이다.
- 37) 이 심사기준은 '98. 8. 1.부터 시행된 것으로 시행일 이후의 출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최근 일본과 중국의 지식재산 인재육성 현황



한 국전쟁을 겪은 이후, 1960년 한국은 실업률 25%, 1인당 국민총생산(GNP) 100달러 이하, 수출은 200만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그로부터 50여년 후인 2011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15위에 달하는 등 경제 강국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자동차, 선박 등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로 성장하였다.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최근 미국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 유럽·미국 기업으로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송이 IT 분야, 전기전자 분

야, 기계소재 분야 등 우리가 자랑하는 기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우리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견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적으로 성장한 우리 기업의 제품을 흉내낸 모방품과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외에도 제품의 기획단계에서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어, 소송 이외에도 연구개발 단계에서조차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과거 지식재산 정책이 지식재산권의 양을 늘

리는 정책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질적인 면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지식재산 인재육성 정책도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위한 인재육성 정책에서 지식재산권의 등록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우리와 인접한 일본과 중국에서도 지식재산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소로 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에서부터 활용에까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일본과 중국의 지식재산 인재육성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지식재산 인재육성

추진 경과

2003년 일본은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 전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지식재산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독립된 장으로서 지식재산 인력육성 정책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식재산 인력육성계획 및 추진에 대한 공공부문·산업계·교육계의 광범위한 동의를 도출하였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다.

2006년 1월에는 지식재산 인력육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성과와 향후 추가 계획을 집대성한 「지식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현재 6만에서 12만으로 늘리고 동시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식재산 창출 및 매니지먼트 인재육성의 질을 고도화하고, 국민의 지식

재산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는 3가지 목표로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인재, 첨단기술을 아는 인재, 융합인재, 지식재산경쟁에서 이겨나가는 경영인재, 중소기업·지역에 도움이 되는 인재 등 5가지 인재상을 양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일본지식재산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와 대학, 발명협회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지식재산 인력육성을 위한 연구 활성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확충, 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다양한 활동이 수행되었다.

2011년 10월 31일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식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표준화 전문 조사회’ 제1회 회의에서 「지식재산추진계획 2011」의 실시 현황과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를 위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식재산추진계획 2011」을 통해 실시되었던 「지식재산 이노베이션 경쟁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지식재산 인재육성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후 지난 1월 20일 제3회 회의에서 「지식재산 인재육성계획(안)」을 공개하고, 이를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3월 9일 개최한 제7회 회의에서 공개한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에 반영할 중점 사항(안)의 핵심 전략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하여 일본 지식재산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시대의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식재산관리, 차세대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 및 확보 등을 책정하였다.

지식재산전략본부의 회의 내용 및 자료를 살펴보면, 이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의 지식재산 인재육성은 지식재산권의 취득, 유지, 관리를 위한 인재육성이었던 반면, 최근 지식재산 인재육성의 방향은 지식재산을 사업 및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육성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부수적으로 시행했던

지식재산 인재육성을 올해에는 보다 집중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추진계획 2011」의 인재육성계획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과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인재) 및 세계를 무대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글로벌 지식재산 인재) 육성,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고취시켜 창의공부 및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의식 함양 등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지식재산 인재육성계획을 확립하고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추진계획 2011」에서 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인재육성 강화,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학과의 제휴 강화, 지식재산 인재육성기관 간의 국제적인 제휴 강화,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지식재산전략을 반영하기 위한 지원능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한 변리사 육성, 계속연수제도 등을 활용한 변리사의 능력 강화, 중소기업진단사의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연수 추진, 국제적인 특허심사협력의 추진을 위한 심사관의 연수 강화, 지식재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인터넷 상으로 이용가능한 지식재산 교재 개발, 초·중고생의 지식재산 교육 실시 등의 단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재육성계획의 검토 방향

Apple社와 Microsoft社, Sony社 등 6개 기업이 45억 달러에 캐나다 통신기업인 Nortel社의 특허포트폴리오를 인수한 사건과 Google社가 Motorola社를 125억 달러에 인수한 사건 그리고 미국이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특허제도를 개정한 사건 등 최근 지식재산을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향후 10년 후,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지식재산 전략을 책정하고 실시하며, 변리사와 변호사가 글로벌 지식재산 전략에 관한 기업 컨설팅으로서 활동하는 등 지식재산 생태계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지식재산 인재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지식재산을 경영 및 이노베이션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식재산 인재육성계획을 검토하였다.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인재 육성 측면에서는 대학원이나 연수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場)을 마련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응한 경영 전략 및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글로벌 출원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관을 육성·확보하여 심사의 품질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 시대의 기업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변리사 등의 전문가를 육성·확보하고, 필요한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검정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지식재산 인재의 저변 확대 측면에서는 지식재산부서나 지식재산 인재를 보유한 대기업과는 달리 지식재산 인재의 확보가 곤란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인재의 육성 및 확보를 도모하고, 초·중고, 전문대, 대학 등의 교육과정에

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재산 인재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지식재산 인재육성계획 추진 체제의 정비 측면에서는 기존 「지식재산 인재육성 추진협의회」의 활동이 있지만,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에 반영할 중점 사항(안)의 인재육성계획

산업 구조와 이노베이션 모델이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매니지먼트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지식재산 인재 역시 필연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관리를 주로 하던 지식재산 인재에서 경영 및 이노베이션 전략에 따라 글로벌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지식재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재로 변화해가고 있다. 또한, 기업의 판매 거점뿐만 아니라 제조·R&D 거점이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지식재산 부문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에 반영할 중점 사항(안)에서의 인재육성계획은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인재의 육성,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 지식재산 인재의 저변 확대, 지식재산 인재육성계획 추진 체제 정비 등 4가지 방향으로 책정되었다.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 국제 경쟁력 강화에 공헌하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확보를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경영 전략에 이바지하는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 최근 기술혁신

과 기술의 융·복합에 대응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정적인 권리 설정을 위해 특허심사관의 기술지식 확충과 기술 대응폭이 넓은 특허심사관 육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심사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의 경영 활동에 이바지하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 제도와 운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지식재산 인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각 분야의 산업계와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제 표준화 전략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지식재산 인재육성계획의 추진 체제 정비를 위해서, 지식재산 인재육성에 관한 협의회는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인재육성을 검토하기 위한 참가 기관 및 위원을 확충하여 국제 표준 및 지식재산 매니지먼트에 관한 세미나의 정기적인 개최와 참가자 및 콘텐츠의 충실화 등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지식재산 인재육성을 위한 체제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 인재육성

추진경과

중국은 2003년 WTO에 가입한 후, 지식재산권의 부재와 전문인재의 부족이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에 장애가 됨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북경대를 포함한 주요

18개 대학의 법대 총장들은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중국의 지식재산 인재육성 관련 정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후 2005년 중국은 국가발전을 위한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에 「백·천·만 지식재산 인재공정(百千万知識產權人才工程)」을 포함하면서부터 지식재산 인재육성을 주요 국가 지식재산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중국 국가지식산업국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체계적인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해 부처 간의 통합적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 교육기관 설치 계획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지식재산을 과학 기술, 인적자원과 함께 국가발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격상시키면서, 추진 중인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들이 더욱 강화되었다. 2010년에는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Made in China’에서 ‘Designed in China’로 이행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R&D 투자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비 계획을 포함시키면서, 단기 지식재산 지도가 양성을 위한 대학 내 지식재산 교육자 육성계획과 대학에 지식재산 관련 전공 또는 코스의 설치 장려, 지식재산권법 직장 석사과정 교육 프로그램 촉진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백·천·만 지식재산 인재공정」이 시작된 이후 고등인재들이 미국, 독일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지식재산양성소(China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Center, CIPTC)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 인재가 육성되고 있으며, 이렇게 양성된 인재 수는 2010년 한해에만 38,000명에 이르고 있다.

백·천·만 지식재산 인재공정

「백·천·만 지식재산 인재공정」은 지식재산권에 정통하고 법령 및 국제조약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100명의 고등인재와 지식재산권의 매니지먼트와 법률·정책 연구,

특히 심사·행정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는 수천 명의 전문인재, 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와 특허증개 업무에 종사하는 양호한 수양을 갖춘 수만 명의 전문기능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천·만 지식재산 인재공정」에 따라, 국가지식산업국이 총체적인 지식재산 인재육성계획을 수립하면 각 지역 지식산업국이 지역 지식재산 인재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식재산 관련 단체가 지식재산 인재 교육과 교재 출판·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인재 12차 5개년 계획

국가지식산업국은 2011년 11월 발표한 「지식재산권 인재 12차 5개년 계획(知識產權人才“十二五”規劃)」을 통해, 지식재산권 사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이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권 인재육성계획은 시장의 수요와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계획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식재산 인재육성계획이 지식재산 인재의 수요와 수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었고, 육성된 인재에 대한 평가시스템이나 검증도 불충분한 상태였다. 또한, 선진국 기업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부서가 있으나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부서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육성된 지식재산 인재의 활용이 불확실한 상태였다. 이외에도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관련 전공 또는 코스가 전국적으로 10여 곳이며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자도 500명 이하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자의 대부분이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배경지식, 이론적 연구능력, 풍부한 실무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지식재산권 인재 12차 5개년 계획」은 2015년까지 특허심사를 위한 9,000명의 전문인재와 10,000명의 특허대리인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지식재산 인재의 능력을

향상시켜 인재배치를 체계화하며, 정책적인 보장과 기관의 보증을 통해 육성된 지식재산 인재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 마련을 목표로, 지식재산권 행정관리 및 법집행 인재육성계획, 특허심사 인재능력 향상계획, 기업·비영리단체의 지식재산 인재개발계획, 지식재산서비스 인재 지원계획, 고등인재지도계획, 지식재산 교육자 육성계획 등 6가지 중점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계획을 통하여 충분한 지식재산 인재를 확보하여 시장 수요에 맞추어 배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재풀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마무리

이처럼 우리와 인접한 일본과 중국에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지식재산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러한 지식재산의 역량을 강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육성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초기에는 지식재산권의 취득, 유지, 관리를 위한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식재산을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이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인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변화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지식재산 인재육성 정책을 재점검하

고 시장에서 원하는 지식재산 인재 즉, 지식재산을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재육성 정책을 계획하거나 실시 중에 있다.

이에 우리도 정부차원에서 미래의 지식재산 생태계를 예측하여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인재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육성된 지식재산 인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2.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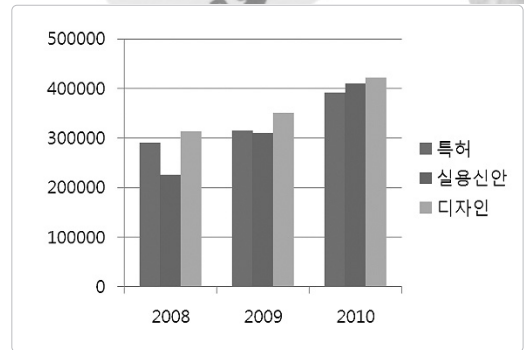


문 명 섭 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인프라팀



중국 실용신안제도는 활용할 만한 것인가?

중국 특허법은 실용신안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 실용신안제도는 이용할 만한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용신안은 꾸준히 특허와 함께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원건수 증가는 중국 출원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Chint vs Schneider 판결 이후, 중국 변리사 등이 실용신안제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2009년 제3차 개정에서 특허법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소위 '이중출원'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실용신안제도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과연 충분한 매력력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실용신안의 보호 객체

특허법 제2조 제3항

실용신안이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

술방안을 가리킨다.

물품만 보호

한국의 실용신안법과 동일하게, 실용신안의 대상으로 방법 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제조방법, 사용방법, 통신방법, 처리방법 등은 실용신안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물품의 형상 또는 구조

물품의 형상

물품의 형상이란 물품이 가지고 있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확정된 공간을 말한다. 확정되지 않는 형상을 가지는 물품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기계상, 액상, 분말상, 과립상 물질 또는 재료의 형상은 불확정 형상을 가지고 있어 실용신안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물품의 구조

물품의 구조는 물품의 구성요소의 배치, 구성 및 상호관계를 말한다. 물품의 구조는 기계적인 구조와 회로 구조를 포함한다. 물품의 복수 개가 적층된 구조도 물품의 구조에 해당한다. 하지만, 물질의 분자구조, 조성 등은 물품의 구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호대상이 아니다.

기술방안

특허법 제2조 제항에서 기술방안이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에 대하여 채택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수단의 집합을 가리킨다. 다만, 중국 특허법은 “청구항은 기술방안”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기술방안”은 한국 특허법상의 “기술적 사상”보다 상당히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심사지침서에서는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하나 이상

의 실시방식 또는 실시 예를 개괄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항에 기재되는 기술방안의 의미는 실시 예를 개괄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실무상에서 단순히 기술적 사상을 기재한 경우 심사관은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출원

특허법 제9조 제1항¹⁾

제9조 ① 동일한 발명은 단지 하나의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출원인이 같은 날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을 출원하였고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획득한 실용신안권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출원인이 당해 실용신안권을 포기하는 것을 선언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규정의 설명

이 규정은 선출원주의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만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날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과 특허를 신청하였고,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권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며, 출원인이 실용신안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한다면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서 규정은 2009년 3차 개정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소위 “이중출원” 제도이다.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실용신안출원에 대하여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출원제도를 이

1) 한국의 경우, 이중출원제도는 실용신안출원에 대하여 심사주의를 채택하면서 폐지되었고, 변경출원제도가 도입되었다. 중국특허법은 실용신안출원과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용하여 먼저 실용신안권을 확보하고 추후에 특허권을 최종적으로 획득하는 전략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실용신안출원의 심사절차

개요

중국특허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무심사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초보심사만 진행하고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보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을 등록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초보심사는 출원서류에 대한 방식심사와 명백한 실질적인 흠결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로 이루어진다.

명백한 실질적인 흠결에 대한 심사

주요 거절이유로서 특허법 제5조, 제25조가 규정한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 대상인지 여부, 특허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한 기술방안인지 여부, 특허법 제33조에 부합하는 보정인지 여부, 특허법 제31조 및 특허법 실시세칙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단일성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특허법 실시세칙 제43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출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특허법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규성을 명확하게 구비하지 않았는지 여부, 특허법 제9조에 따라 명백하게 선출원주의를 위반하는지 여부, 특허법 제20조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특허법 제22조 제2항에 대한 신규성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 실질심사와는 다르게, 선행기술을 검

색하지 않고 신규성을 명백하게 구비하지 않았는지 판단한다. 또한,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한지를 심사하여 권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단일성에 대한 판단도 “특정 기술특징”을 정함에 있어서, 실질심사와는 다르게 명세서에 기재한 배경기술을 기준으로 한다.

특허권 허여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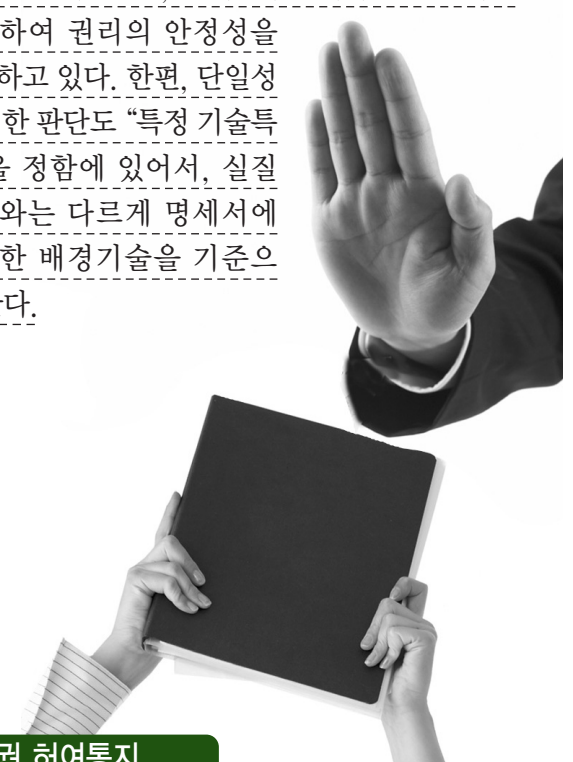
초보심사를 거친 후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바로 실용신안권을 허여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실용신안권이 등록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출원서류의 형식심사

초보심사에서 출원서류에 흠결이 존재하여 보정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보정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출원인의 보정에 의하여도 여전히 출원서류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다시 보정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명백한 실질적인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출원서류에 대한 흠결이 아닌, 위에서 설명한 규정에



따른 명백한 실질적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심사관은 명백한 실질적 흠결에 해당하는 특허법 및 특허법 실시세칙을 의견제출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특허법 제33조에 대한 심사

특허법 제33조는 출원서류에 대한 보정이 원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실시세칙 제51조 제2항은 실용신안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실용신안출원에 대하여 자진보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원인의 자진보정

출원인의 자진보정이 출원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보정서류에 의하여 원 출원서류의 흠결을 제거하였고 실용신안권을 수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절약의 원칙상 보정서류를 인정한다. 이러한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미제출간주통지서를 발행한다. 자진보정이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출되었다라도 특허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심사하고, 만약 특허법 제33조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통지서에서 대한 보정

통지서에 대응한 보정서류는 원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범위를 초과하였는지와 통지서에서 지적한 흠결에 대하여 보정하였는지 심사한다. 원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범위를 초과한 경우, 특허법 제33조를 이유로 거절결정할 수 있다.

통지서에서 지적한 흠결에 대한 것이 아닌 보정에 대해서는, 원 출원서류의 흠결을 해소하였고 실용신안권의 수

여가능성이 있으면 절차절약의 원칙상 그 보정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보정은 통지서에서 지적한 흠결이 아님을 이유로 특허법 실시세칙 제51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특허법 실시세칙 제51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 보정은 심사관이 그 보정서류를 인정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출원인의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면 보정전의 서류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거절결정

명백한 실질적 흠결이 존재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하였지만, 통지서에서 지적한 흠결에 대하여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통지서에서 지적한 흠결에 대해 보정하였지만, 여전히 통지서에서 지적한 흠결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출원인에게 다시 의견진술 또는 보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후 출원인이 동일한 흠결에 대해 다시 보정하였지만 이미 통지한 흠결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출원서류의 형식심사에서 지적된 흠결이 존재하고 심사관이 이미 2회의 보정통지서를 발행하였고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에 의하여 흠결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 평가보고서

관련 규정

특허법 제61조 제2항

특허침해분쟁이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관리부서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특허청이 관련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검색,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한 후 작성한 실용신안권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허침해분쟁을 심리, 처리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특허법 실시세칙 제56조

제56조 ①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권 부여 결정이 공고된 후 특허법 제60조 규정에 근거하여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특허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 평가 보고서 작성을 청구할 시 특허권 평가 보고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허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각각의 청구는 하나의 특허권에 한한다.

③ 특허권 평가 보고서 작성 청구서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시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는 지정된 기한 내에 보정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구인이 기한 만료일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규정²⁾

동 규정 제9조는 인민법원에서 수리한 실용신안 침해분쟁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해야 하지만, 실용신안의 신규성, 진보성을 상실하는 기술문헌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평가보고서를 원고가 제출한 경우 소송을 중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권 평가보고서를 침해소송에서 제출하는 경우, 실질심사가 진행된 특허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소송 절차를 중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가보고서의 활용

실용신안권 평가보고서는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관리부서가 특허침해분쟁을 심리, 처리하는 증거로서 사용되며, 주로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관리부서가 관련 절차를 중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평가보고서 작성

개요

특허청은 실용신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검색을 진행하고 특허법 및 특허법 실시세칙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분석 및 평가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성기간

특허청은 실용신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서와 청구비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보고서에는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을 포함하는 특허법 및 특허법 실시세칙에 부합하는지 명확한 결론을 기재해야 한다.

불복 가능 여부

실용신안권 평가보고서는 특허청에 의한 행정결정이 아니므로, 실용신안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재심 및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다.



무효심판

진보성 판단

특허법 제22조 제3항

진보성이란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는 것을 가리키며, 당해 실용신안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진보성 판단방법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양자는 주로 종래기술에 “기술암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특허는 해당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분야도 고려해야 하지만, 실용신안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술분야를 주로 고려하여 기술암시가 있는지 판단한다. 또한, 특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래기술을 인용하여 진보성을 판단하지만, 실용신안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두 개의 종래기술을 인용하여 진보성을 판단한다.

청구항의 정정

실용신안권자는 답변기간에 한하여 청구항을 정정할 수 있다. 또한, 실용신안에 대한 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정의 범위는 등록청구항의 보호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되며, 원 청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기술특징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정의 기간 및 범위는 특허의 정정과 동일하다.

실용신안제도의 활용 가치

실용신안제도는 진보성이 낮은 기술을 권리로 인정함

으로써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논란 속에 실용신안제도는 심사제도를 채택하거나 존속기간을 짧게 해야 한다거나 권리의 효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거나 심지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 없이 있어 왔던 것이다.

역으로, 실용신안권이 특허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취급된다면 그 권리행사면에서 특허권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산업발전을 저해할 정도의 기술, 즉 산업발전 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기본 전제로, 출원인의 입장에서 중국의 실용신안제도의 활용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존속기간의 측면을 제외하고, 특허권에 비하여 진보성 기준이 낮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효력이

2)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규정”은 인민법원이 침해분쟁 사건에서 소송을 중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 ① 실용신안 침해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제소 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발행하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 분쟁사건의 피고가 소송중지를 청구하는 경우, 답변기한 내에 원고의 특허권에 대해 무효선고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에서 수리한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분쟁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동 특허권에 대해 무효선고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中止)해야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소송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1. 원고가 제출한 평가보고서에서 실용신안의 신규성, 진보성을 상실하는 기술문헌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2.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사용한 기술이 공지됨을 증명하는데 충분한 경우,
3. 피고가 동 특허권에 대해 무효선고 청구에 제공한 증거 또는 근거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중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제10조 인민법원에서 수리한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분쟁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기한 만료 후에 동 특허권에 대해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하지 말아야 하나, 심사를 거쳐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은 제외 된다.

제11조 인민법원에서 수리한 특허권 침해분쟁 사건 또는 특허복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이 유지된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분쟁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동 특허권에 대해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하지 않아도 된다.

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진보성이 낮은 기술은 산업발전에 따라 반드시 사용되는 기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용신안권은 강한 권리(실질적으로 소송이나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작용할 수 있다.

실용신안출원은 실질심사 없이 초보심사만으로 등록되므로, 특허출원에 비하여 짧은 심사기간을 가진다.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10년이지만 심사기간이 짧으므로, 실용신안권은 10년에 가까운 효력기간을 가지며, 원천기술 등이 아닌 한 일반적인 기술의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충분할 것인지 판단되지 않는 경우, 이중출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중출원은 관련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에 출원인 입장에서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권리행사 단계에서 평가보고서의 작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작성기간이 2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평가보고서가 있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면에서 특허권에 비해 불리함이 없다. 특히 평가보고서에서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용신안권자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 설사 무효심판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청구항의 정정이 가능하며 이 또한 특허권과 비교할 때 정정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낮은 기술을 조속히 권리화할 수 있고, 이의 권리행사도 크게 제약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수명이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조기에 실시가 필요한 기술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실용신안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출원인들이 외국 출원인들에 비하여 실용신안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요즘에,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외국 출원인들이 실용신안출원 건

수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데, 중국의 판례 및 이중출원제도의 도입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기술의 내용, 기술 수명, 조기 실시의 필요성 및 진보성의 수준을 고려하여, 실용신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기업이 중국에서의 특허전쟁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012. 5 |





특허 Q&A

Q.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A.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에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PCT회원국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고, 구체적인 명단은 www.wi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함.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므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함.

▣ PCT 국제출원의 특징

-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됨.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을 우선권으로 주장하면서 KR(우리나라)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우리나라 국내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하됨.

Q. 국제출원비용에 대한 감면 또는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A. PCT 전자출원 시 국제출원료의 일부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PCT-SAFE Easy Mode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기본료 중 100CHF이 감면됩니다. PCT-SAFE Full Electronic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기본료 중 300CHF이 감면됩니다.

그리고, 국내 개인 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제출원비용보조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홈페이지 “www.kipo.go.kr → 특허 마당 → PCT → PCT국제출원 지원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

상표권 침해에 대한 eBay의 책임¹⁾

온라인 시장에서 불법적인 저작물의 유통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유명상표의 상표권자들은 직접침해자인 판매자뿐만 아니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론의 핵심은 저작권법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법리에 따라 간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여부이다.

이처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문제는 저작권법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상표법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저작권법 분야에 규정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규정은 상표법 분야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해 상표법 혹은 관련법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규정이 도입되거나 좀 더 명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²⁾ 이러한 상황 하에서 최근 미국에서 이용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2차적 책임에 대해 다룬 Tiffany v. eBay 사건³⁾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위조 상품의 거래 방지를 위한 eBay의 노력, 그리고 Tiffany v. eBay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상표법적 책임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다.

위조 상품의 거래 방지를 위한 eBay의 노력

eBay에서 위조 상품의 거래현황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보석과 시계 범주(Jewelry & Watches Category)에서 450,000개 이상의 Tiffany 제품이 판매되었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통해 eBay사는 대략 41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⁴⁾ eBay를 통해 판매된 제품 가운데 위조 상품의 비율에 대해서 여전히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Tiffany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조 상품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과 2005년 두 번에 걸쳐 조사(Buying Programm)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처음에는 186개, 두 번째에는 139개의 Tiffany 보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위조 상품의 비율이 73.1%와 75.5%에 이르렀다. Tiffany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위조 상품을 조사하였는데, 법원은 Tiffany의 조사가 임의로 견본을 추출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견본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Tiffany는 조사기간 동안에 권리자 검증(Verified Rights Owner: VeRO)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 이로 인해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품의 어느 정도가 퇴출될 수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Tiffany 제품의 30% 이상은 위조 상품에 해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같이 eBay에서 상당한 비율의 Tiffany 위조 상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즉, Tiffany가 권리자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Tiffany의 조사를 통해 상당한 양의 위조 상품이 eBay에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⁵⁾ eBay는 법적 분쟁에서 지속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해 화면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 법원도 많은 경우에 위조 상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물리적

시험,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⁶⁾ 실제로 소송에 대비하여 Tiffany가 수행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약 20% 정도는 위조 상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⁷⁾ 또한 실제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라고 eBay에게 통지되어 해당 제품이 퇴출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소송과정에서 지적되었다.⁸⁾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eBay의 조치와 평가

수년 전부터 eBay는 자사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표품의 판매는 허용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의 일환으로 이용자와 계약(약관)을 통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eBay는 자신의 사이트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매자가 위조품을 구입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것을 보상해주는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buyer protection programs)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신뢰·안전(Trust and Safety) 부서를 만들어서 4,000명가량의 직원을 고용하였고, 그 중 200명은 위조 상품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전담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위조 상품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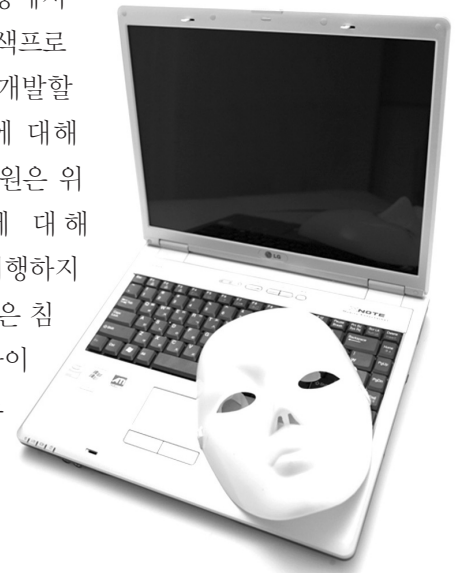
1) 본 내용은 비교사법 제18권 제1호(2011.03)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2) 김병일, "오픈마켓 서비스와 상표권 침해", 「산업재산권」 제33호(2010.12), 81, 105쪽.
 3) 2010년 11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Tiffany v. eBay, 131 S.Ct. 647)은 Tiffany와 eBay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eBay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제2항소법원의 판단(600 F.3d 93 (C.A.2 2010))을 지지하여 최종적으로 Tiffany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4) 576 F.Supp.2d 463, 481 (S.D.N.Y. 2008).
 5) 576 F.Supp.2d 463, 513 (S.D.N.Y. 2008).
 6) 576 F.Supp.2d 463, 472 (S.D.N.Y. 2008).
 7) 576 F.Supp.2d 463, 485 (S.D.N.Y. 2008).
 8) 576 F.Supp.2d 463, 517 (S.D.N.Y. 2008).

한 eBay 노력의 핵심은, 권리자검증 프로그램과 위조 상품의 판매에 대해 권리자로부터 통지(notice)가 있으면 그때마다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지(take-down)되는 통지 및 중지(notice and take-down) 절차이다.

지적재산권자는 권리자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를 보고할 수 있으며,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의 경우 해당 리스트에서 삭제된다. 현재 28,000명 이상의 개인 또는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권리자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해결을 위한 eBay 직원의 어시스트, 권리자검증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권리 침해가 보고된 상품의 경우 리스트에서 삭제, 그리고 권리의 침해가 의심되는 eBay 회원의 연락처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⁹⁾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의 통지가 매주 수천 건에 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 제품의 판매는 24시간 이내에 중지(take-down) 혹은 제거된다. 권리자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보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Tiffany도 대략 284,000건을 신고하였다.¹⁰⁾ 특히, eBay의 통지 및 중지(notice and take-down) 절차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eBay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경고, 계정 일시적 정지, 그리고 판매자 퇴출이라는 3진 아웃 제도(3-Strikes-Rule)를 운영하고 있고,¹¹⁾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자신들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자동적으로 탐색하는 FADE(Fraud Automated Detection Engine)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¹²⁾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하고 이러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중지, 경고 혹은 판매자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 Tiffany도 위조 상품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지만 2003년부터 판매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의 제기를 자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Tiffany가 직접침해자인 판매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효과적인 경고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¹³⁾ 또한 재판과정에서 Tiffany가 특별한 검색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개발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은 위조 상품의 경매에 대해 Tiffany가 실제로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좀 더 많은 침해리스트를 eBay 사이트에서 캡처할 수도 있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¹⁴⁾



상표권 침해에 대한 eBay의 책임

사건의 개요

Tiffany는 1837년 미국의 Charles L. Tiffany와 John B. Young이 뉴욕에 세운 보석회사로, 최상급의 원석만을 사용하고 특별한 세팅기술을 갖춘 회사로 유명하다. 특히, 결혼반지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미국 명품의 자존심으로 통하고 있다. 창업 초기에는 Tiffany & Young이라는 회사명으로 문방구와 도자기를 취급하였으나 곧 보석점으로 바뀌었고, 1845년에 보석업계로는 처음으로 주문방식거래를 채택하여 보석

점뿐만 아니라 일반 소매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1850년에는 파리에, 1868년에는 런던에 지점을 설치하며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하였고, 1886년 개발된 다이아몬드 세팅기술은 백금으로 된 6개의 발이 다이아몬드를 떠받치고 있는 디자인으로 흔히 Tiffany 세팅 또는 육지세팅이라고 불리고 있다.¹⁵⁾ 이처럼 오랜 전통과 우수한 품질로 유명한 Tiffany는 최근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eBay를 통해 판매되는 위조 상품으로 인해, 상표 이미지 손상은 물론 주요 시장까지 위협받고 있다. eBay사도 자신의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조 상품을 검색하여 자신의 사이트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ay 사이트에서 Tiffany 위조 상품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Tiffany는 eBay에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마침내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eBay에서 위조 상품이 거래된 것을 이유로 2006년에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기여침해에 대한 책임

판단기준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스스로 한 자가 직접침해자인데, eBay는 판매자도 아니고 위조 상품을 스스로 소유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eBay의 직접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¹⁶⁾ 즉, 지방법원과 제2항소법원은 원고의 상표를 피고가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제품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혼동의 우려, 원고와 피고가 특별한 관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지명적(指名的) 공정이용(nominative fair use) 이론을 원용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상표법 분야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위침

해¹⁷⁾와 기여침해에 대해 eBay가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여부가 핵심 법적 쟁점이었다. 다만, 원고인 Tiffany가 eBay의 대위침해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기여침해에 대한 eBay의 책임만이 재판절차에서 논하여졌다. 미국 상표법상 기여책임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1982년 Inwood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고 있는데, Inwood 사건에서 원고인 Ives Laboratories는 Inwood Laboratories 등이 약사들로 하여금 약품의 라벨을 다르게 붙이도록 유도하였으므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manufacturer)나 유통업자(distributor)가 고의적으로 다른 자로 하여금 상표권을 침해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자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¹⁸⁾

재판과정에서 제조업자(manufacturer)나 유통업자(distributor)가 고의적으로 다른 자로 하여금 상표권을 침해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았고, 다른 자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¹⁹⁾ 영미법은 전통적인 판례법이지만 그 판례들을 나름대로 정리

9) 576 F.Supp.2d 463, 488 (S.D.N.Y. 2008).

10) 576 F.Supp.2d 463, 484 (S.D.N.Y. 2008).

11) 576 F.Supp.2d 463, 488-491 (S.D.N.Y. 2008).

12) 이러한 FADE(Fraud Automated Detection Engine) 프로그램을 개량을 위해 eBay는 매년 5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576 F.Supp.2d 463, 477-478 (S.D.N.Y. 2008))

13) 576 F.Supp.2d 463, 481, 489 (S.D.N.Y. 2008).

14) 576 F.Supp.2d 463, 485 (S.D.N.Y. 2008).

15) 네이버 백과사전.

16) 576 F.Supp.2d 463, 501 (S.D.N.Y. 2008).

17) Perfect 10 v. Visa, 494 F.3d 788, 807 (C.A.9. 2007).

18) Inwood Laboratories, Inc. v. Ives Laboratories, Inc., 102 S.Ct. 2182 (1982).

하여 학자들이 조문화하여 만든 1995년 불공정 거래에 관한 Restatement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유도가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 하에서 이러한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방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기여침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²⁰⁾ 재판과정에서 Tiffany는 1982년 Inwood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Restatement에 의해 기여책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지방법원은 Restatement 상의 기준은 이미 Inwood 사건을 다룬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였다.²¹⁾

인식의 정도

Tiffany와 eBay 사이의 소송에서 또 다른 법적 쟁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Inwood 사건에서 제시한 인식의 정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의 여부였다. 즉, 구체적 인식(specific knowledge)이 있어야 하는지 혹은 위조 상품이 존재한다는 추정적 인식(generalized knowledge)으로 충분한지의 여부가 다투어졌다.²²⁾ 동 사건에서 eBay는 많은 위조 상품이 자신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방법원은 상표권의 기여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정적 인식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²³⁾ 미국 연방대법원도 인식의 정도에 대해 이미 Inwood 사건에서 구체적 인식(specific knowledge)과 관련이 되어야 간접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지방법원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Sony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표법 분야와는 달리 저작권법 분야에서는 추정적 인식만으로도 기여침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여,²⁴⁾ 저작권법 분야에서 보다는 상표법 분야에서의 기여침해에 대한 책임을 좁게 인정하고 있다.²⁵⁾

eBay 사이트에는 중고 Tiffany 제품을 위한 2차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지방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

다. 즉, 모든 Tiffany 제품을 위조 상품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eBay의 단순한 추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eBay의 기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합법적인 2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법원은 상표권의 기여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정적 인식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²⁶⁾ 결과적으로 지방법원은 상표권의 기여침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실제 인식(specific knowledge)이 존재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지방법원은 eBay가 위조 상품이 없는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하여 권리자인증 프로그램, FADE(Fraud Automated Detection Engin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Tiffany의 고의침해주장을 배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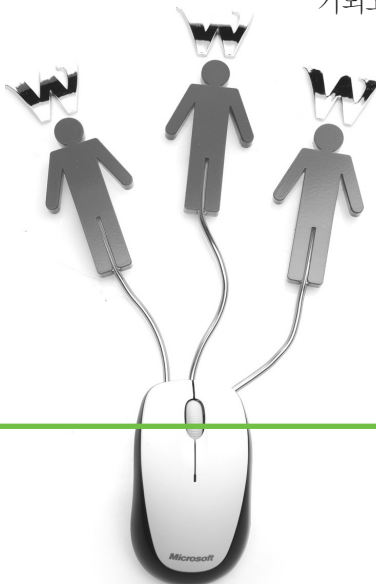
결론 및 전망

Tiffany v. eBay 사건 이후에 저작권법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는 상표법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아직까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eBay의 2차적 책임을 다룬 판례,²⁷⁾ 이용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2차적 책임을 다룬 판례²⁸⁾는 많지 않다. 이미 Fonovisa v. Cherry Auction 사건²⁹⁾에서 직접침해자의 침해에 사용되는 침해의 장소 내지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여 베틀시장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을 인정되기도 하였지만,³⁰⁾ Tiffany v. eBay 사건은 이용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eBay의 2차적 책임을 엄밀한 의미에서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 사건은 상품의 용도 상당부분이 비침해적인 경우에 이러한 상품이 이용자에 의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추정적 인식만으로는 상품

판매자의 2차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Sony 사건³¹⁾에서의 미국 연방대법원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³²⁾

Tiffany v. eBay 사건 이후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문제는 비단 저작권법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상표법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이미 미국 저작권법³³⁾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상에 이용자의 명령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면 서비스 제공자를 면책해주고 있다. 첫째 (i)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의 당해 자료나 그것을 이용하는 행위의 존재를 실제 인식(actual knowledge)하지 못하였고, (ii) 그러한 실제 인식이 없는 때라면, 침해행위가 명백하다는 사실이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iii) 혹은 그러한 실제 인식이나 추정적 인식(constructive knowledge)이 있는 때라면 신속하게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그 자료를 제거하여야 한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행위를 통제할 권리 및 능력이 있는 때에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어야 한다. 셋째, 저작권자로부터 침해를 주장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그 자료를 제거하여야 한다.³⁴⁾ 미국 내에서 Tiffany v. eBay 사건의 판결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2차적 책임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³⁵⁾ 향후에 저작권법에

규정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규정에 상응하는 내용이 법적 안정성도모를 위해 상표법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2012. 5 |



박 영 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19) 576 F.Supp.2d 463, 501-503 (S.D.N.Y. 2008); 600 F.3d 93, 98, 106 (C.A.2 2010).
- 20)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 27 (1995).
- 21) 576 F.Supp.2d 463, 502-503 (S.D.N.Y. 2008).
- 22) 동 사건에 대한 국내 문헌으로는 이창훈,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 문제에 대한 고찰 : 한국과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지식과 권리」(대한변리사회), 2008년 가을호, 47, 48-49쪽 참조.
- 23) 576 F.Supp.2d 463, 507-510 (S.D.N.Y. 2008); 600 F.3d 93, 107 (C.A.2 2010).
- 24) Sony Corp. v. Universal Studios, Inc., 464 U.S. 417, 439 (1984).
- 25) 600 F.3d 93, 108 (C.A.2 2010).
- 26) 576 F.Supp.2d 463, 509-510 (S.D.N.Y. 2008).
- 27) Hendrickson v. eBay, 165 F.Supp.2d 1082 (C.D.Cal. 2001). 동 사건은 피고 eBay가 원고의 침해 주장의 통지를 받고 그 통지가 완전하지 못하며 원고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였을 뿐 스스로 침해물을 찾지는 않은 사안이었는데, 법원은 통지의 내용만으로 침해결과물을 확실히 특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중시하여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지 못해 피고에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DMCA의 면책조항에 의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eBay의 2차적 책임은 부정되었다.
- 28) Gucci v. Hall, 135 F. Supp. 2d 409 (S.D.N.Y. 2001).
- 29) Fonovisa v. Cherry Auction, 76 F.3d 259, 265 (C.A.9 1996).
- 30)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Kenneth A. Walton, Is a Website Like a Flea Market Stall? How Fonovisa v. Cherry Auction Increases The Risk of Third-Party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Hastings Communication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Summer 1997, p. 944.
- 31) Sony Corp. v. Universal City Studios, 464 U.S. 417 (1984).
- 32) Sony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 중 "문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침해적 용도가 일부 있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지는 전체 용도를 기준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을 넘은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 신기술은 법원이 허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Sony 판결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준석,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2006, 523쪽 참조.
- 33) 17 U.S.C. §512(c).
- 34) 서비스 제공자가 17 U.S.C. §512에 의하여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 형태에 따라 17 U.S.C. §512의 (a), (b), (c), (d)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정한 면책요건 이외에도 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일단 다음의 2가지 적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17 U.S.C. §512(i)) 먼저,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가입자들과 계정보유자들 중 반복적인 침해자들은 적절한 조건 하에서 제거해 나가는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가입자들과 계정보유자들에게 위 정책을 알려야 한다. 또한 표준적인 기술적 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준석, 앞의 책, 87쪽 참조.
- 35) Levin, A SAFE HARBOR FOR TRADEMARK: REEVALUATING SECONDARY TRADEMARK LIABILITY AFTER TIFFANY V. EBAY, 24 Berkeley Tech. L.J. 491, 521-526 (2009); Bailey, Fighting an Anonymous Enemy: The Uncertainty of Auction Sites in the Face of Tiffany v. eBay and LVMH v. eBay, 40 Cal. W. Int'l L.J. 129, 170 (2009).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고찰

본 논문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1집 제3호에 게재된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임.



대법원 2010후2773 판결
(JS장수구들 사건)

사실개요

이 사건의 등록상표

출원일/공고일/ 등록번호 : 2007.8.27./
2008. 4. 24./제80096호


등록상표의 구성 : JS장수구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간판, 애완동물용집, 목제상자, 가
대, 강의대, 거울, 걸상, 경대, 다이벤
(Divans), 뒤주, 로커(Lockers), 모자걸이, 벤
치, 병풍, 붙박이찬장, 비귀금속제보석상자, 비
의료용물침대, 삼면경대, 서가, 서류캐비닛, 선
반, 세트, 소파, 식탁, 신문진열대, 신장, 실험
대, 안락의자, 안마대, 열쇠걸이판, 오디오랙,
옷걸이, 우산걸이, 의약품캐비닛, 의자, 의장
(옷장), 이미용품보관대, 장롱, 장의장, 진열대,
진열장, 찬장, 찻장, 책래, 책꽂이, 책상, 책장,
체경, 침대, 돌침대, 탁자, 테이블꽃이, 팔걸이
의자, 피아노의자, 화분대, 화장대, 액자, 이미
용의자, 유아용놀이틀.

비교대상상표(무효심판의 증거)

출원일/공고일 /공고번호 : 2001. 3. 2./2002. 4. 3./상
2002-0012721

비교대상상표의 구성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돌침대

사건의 경위

X(원고, 피상고인)는 상표권자인 Y(피고, 상고인)를 상대로 상표등록 제800096호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0. 4. 19. 2009당2320 심결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Y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피고 Y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일부인용 일부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Y가 상고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773 판결(이하“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상표등록번호 제800096호 상표의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간판, 애완동물용 집, 목제상자, 액자, 이미용 의자, 유아용 놀이틀’을 제외한 지정상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JS장수구들”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800096호) 중 ‘JS’ 부분은 그 뒤에 표기된 ‘장수’의 영문 이니셜 정도로만 인식될 수 있을 뿐이어서 독립적인 식별력이 미약하다 할 것이고, ‘장수’ 부분과 ‘구들’ 부분은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목제 또는 플라스틱제 간판, 애완동물용 집, 목제상자, 가대, 강의대, 거울, 걸상, 경대, 다이벤(Divans), 뒤주, 로커(Lockers), 모자걸이, 벤치, 병풍, 불박이찬장, 비귀금속제 보석상자, 삼면경대, 서가, 서류캐비닛, 선반, 세트, 소파, 식탁, 신문진열대, 신장, 실험대, 안락의자, 안마대, 열쇠걸이판, 오디오랙, 옷걸이, 우산걸이, 의약품캐피닛, 의자, 의장(옷장), 이미용품 보관대, 장롱, 장의장, 진열대, 진열장, 찬장, 찻장, 책꽂이, 책상, 책장, 체경, 탁자, 테이블프켓이, 팔걸이의자, 피아노의자, 화분대, 화장대, 백자, 이미용 의자, 유아용 놀이틀’(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서도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수’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칭호·관념될 수 있다.

비교대상상표의 요부

와 같이 구성된 비교대상상표 역시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문자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 문자 부분 중 ‘e-뜨거운 침대’는 지정상품인 ‘돌침대’와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약한 부분이고, 나머지 문자 부분인 ‘장수돌침대’는 일응 그 색상에 따라 ‘장수돌’과 ‘침대’로 구분될 수 있지만, 지정상품이 ‘돌침대’인 점을 감안하면 ‘장수’와 ‘돌침대’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 가운데 ‘돌침대’ 부분은 지정상품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비교대상상표에서의 요부도 ‘장수’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의 비교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¹⁷⁾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는 각각 ‘장수’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어서 이들 상표의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대상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검토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부분과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때에는 후자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식별력이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여부의 판단대상으로 하여, 대상판결에서는 양상표의 요부를 각각 ‘장수’라고 확정한 후 양상표를 대비하여 이들 상표의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였다.¹⁸⁾ 결국 판례는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는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는 원칙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비교

미국

의의

미국 상표법

미국 상표법은 “랜햄법(Lanham Act)”¹⁹⁾이라고 부른다. 미국 상표법은 등록주의가 원칙이지만, 사용에 의하여 이차적 의미(특별현저성)가 발생하여야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사용주의를 가미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²⁰⁾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나 상호 또는 등록된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혼동(confusion)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오인(mistake)을 유발하거나 또는 기망(deception)하는 표장으로 구성된 표장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²¹⁾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는 미국 상표법 제32조(1)항에 따라 금지된다.²²⁾ 상표권 침해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자의 혼동 여부이다. 미국 법원은 일단 상표권 침해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 피고(침해 혐의자)의 상표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혼동이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가 혹은 속게 되는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게 된다.²³⁾ 상표의 유사 판단시 혼동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판단

미국은 상표법 제1052조[e]와 상표심사기준(TMEP: Trademark Manual of Examination Procedure)²⁴⁾§1207의 규정을 근거로 상표의 유사성을 심사한다. 선등록이나 선출원의 심사는 기존의 상표가 있는지 혹은 유사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유사성²⁵⁾ 판단으로는 혼동가능성의 존재여부와 상품 이미지 희석화 여부의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상표의 유사여부 또는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혼동을 유발하는지가 기준이 된다.

혼동가능성 존재 여부

혼동가능성 평가는 병렬적 비교를 통해 상표의 차이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표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시킬 가능성이 충분한 유사성이 있는지를 찾는 평가이다.

혼동이론(Confusion Theory)은 상표의 본질은 상품의 출처(source, origin)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면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혼동시킬 수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는 미국 상표법의 목적이 소비자를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상표의 침해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며, 상표소유자의 영업적 신용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DuPont De Nemours사건²⁶⁾에서 혼동가능성의 판단기준이 제시되었다. 혼동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i) 전체적으로 외관·칭호·관념·상업적 영향에 관해 상표의 유사성 또는 차이점, (ii)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성 또는 차이점, (iii) 확립되어 있고 계속 사용될 거래 경로의 유사성이나 차이점, (iv) 사전 상표의 명성(판매, 광고, 사용기간), (v) 실제 혼동의 속성 및 범위, (vi) 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상품의 다양성(회사 상표, 제품 상표)등이다.

상품 이미지 희석화 여부

희석화이론(Dilution Theory)은 상표보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상표는 상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신용(goodwill), 품질(quality) 또는 상표가 전달하는 정보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표의 목적은 이러한 신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희석화행위(dilution)로부터 상표사용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상표소유자의 권리는 상품의 출처 또는 보증(sponsorship, 후원관계)에 대한 혼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희석화이론은 상표권을 확장하는 이론으로 전통적인 혼동이론을 수정·변경하는 이론이다.²⁷⁾ 새로 개정된 연방 상표반희석법(FDFTA)²⁸⁾에 의하면, 희석화이론은 모든 상표에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유명한 상표에만 적용된다. 상표가 유명한지의 여부는 상표 사용기간, 상표의 독특함, 지역적 인식도, 상표 사용방법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²⁹⁾ 상품 이미지 희석화는 타인의 상표 사용이 혼동가능성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상표권자의 상표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식별력을 흐리게 하는 주지·저명 상표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Bose 사건³⁰⁾

사실관계
Bose Corporation(이하“Bose”라 한다)은 지정상품을 증폭기 및 음악시스템으로 하는 등록상표 “ACOUSTIC WAVE 및 WAVE”에 대한 상표권자이다. Bose는 QSC AUDIO PRODUCTS, INC.(이하“QSC”라 한다)가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 “POWERWAVE”가 증폭기의 출처에



- 17)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 18)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대법원 2011. 7. 8. 선고 2011후538 판결.
- 19) 15 U. S. C. § 1051-1127.
- 20) 나종갑, 미국상표법연구, 도서출판 글누리, 2006, 209면.
- 21) 15 U. S. C. §1052)(d).
- 22) 제32조(1항)는 수요자(상품 구매자)가 상품의 출처 또는 협찬 및 제휴 사실을 혼동하거나, 오해하거나 속을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광고와 관련된 등록상표가 허가되지 않으면 사용을 금지한다.
- 23) 김형진, 미국상표법, 지식공작소, 1999, 155면; 15 U. S. C. §1114(1).
- 24) TMEP 제7판(<http://tess2.uspto.gov/tmdb/tmep>): § 1200 Substantive Examination of Applications.
- 25) U. S. TMEP § 1207.01(b) Similarity of the Marks
- 26) In re E. I. Du Pont de Nemours & Co., 476 F.2d 1357, 1361, 177 USPQ 567 (C.C.P.A. 1973).
- 27) 나종갑, 앞의 책, 32면.
- 28) 15 U. S. C. § 1125(c)(1)(A)-(H) : Remedies for dilution of famous marks.
- 29) 김형진, 앞의 책: 1995년 법이 개정된 이후의 판례에서 확인된 유명 상표의 예는 장난감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캔디랜드(CANDYLAND), 맥주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버드와이저(BUDWEISER) 등이 있다.
- 30) Bose Corporation v. QSC Audio Products, Inc. 293 F. 3d 1367(Fed. Cir. 2002).

관해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청구하였다. 항고 심판소는 POWERWAVE 상표는 Bose의 상표와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Bose는 이 결정에 대하여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하였다.

판결요지

CAFC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항고심판소의 결정을 기각하였다. ACOUSTIC WAVE 및 WAVE는 저명한 상표이고, 당사자들의 제품은 관련되며, 거래 경로 및 상표의 유사성은 혼동가능성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혼동가능성이 있다.³¹⁾

시사점

본 판결은 저명상표에 대한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경우, DuPont 요소들을 적용하여 비교·판단한 사례이다. 저명상표는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인식과 명성을 가지는 상표를 말하므로, 이를 복제하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서 혼동가능성의 판단요소로 상품의 명성의 정도, 소비자의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의 품질 및 실제적 혼동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의의

유럽 상표법 및 심사기준

유럽공동체(EC)의 상표는 CTM(Community Trade Mark, 이하 “유럽상표”라 한다)이라고 한다. CTM은 유럽공

동체상표법(CTMR : 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 이하 “유럽상표법”이라 한다)³²⁾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OHIM에 등록된 상표로 유럽연합(EU)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는 표장이다. 유럽상표의 유사여부는 유럽 상표법 및 유럽 공동체 상표심사기준(Guidelines, 이하 “유럽심사기준”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특히 상품과 서비스의 동일 또는 유사 판단은 유럽 상표법 제8조(1)(b)³³⁾에 따라, 상표의 유사성은 혼동가능성(LoC)을 판단하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다. 선등록상표가 보호되고 있는 영토내의 일반공중이 느끼는 상품의 출처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³⁴⁾ 즉 유럽의 경우, 상표의 유사판단은 혼동가능성의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 상표분쟁이 발생하면, 결정계소송의 심급제도는 OHIM 항고부(Boards of Appeal)심결에 대하여 CFI(Court of First Instance, 1심법원), ECJ(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사법재판소)로 이어지는 심급구조이다. 그러나 당사자계 소송의 경우에는 OHIM 또는 회원국 법원에서 항소는 CFI, ECJ의 심급구조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상표의 유사판단

유럽 상표법 제8조(1)(b)에 의하면, 상표의 유사성은 대비되는 상표의 외관, 칭호 또는 관념의 대비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즉, 상표의 유사판단은 일부 독립적인 요소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대비되는 상표의 전체적인 인상에 의하여야 하고, 독특하고 지배적인 요소는 표장간의 유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³⁵⁾ 또한 동법에서 혼동가능성은 “일반 공중이 문제시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동일한 출처에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관련된 출처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리스크(risk)”라고 정의하고 있다. 혼동의 범위에 대한 공통의 출처에 대한 중요함은 대비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일종의 유사함에서 나타난다.³⁶⁾

결합상표의 유사판단³⁷⁾

유럽상표의 결합상표에 대한 심사에서 유사판단의 주요기

준은 다음과 같다. (i) 도형 및 문자 구성을 포함하는 상표 : 상표가 도형 및 문자의 요소로 구성된 때에는 상표의 문자부분이 도형부분에 비해 수요자들에게 더욱 강한 인상을 주고, 호칭되는 부분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KALMA 와 도형 + KALMA의 경우, 혼동가능성이 있다. (ii) 여러 요소(multi-part)로 된 문자상표 : 상표 전체 또는 구성요소의 하나만이 다른 상표에 완전히 결합된 경우이다. 상표의 길이 및 의미가 중요하다. 상표를 분리관찰시 공통된 단어가 독립된 형태로 인식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 두 단어 중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및 그와 동일한 길이로 된 두 단어로 이루어진 상표를 대비할 때, 일반적으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예를 들어, PLANET 와 PLANET SOCCER의 경우, 혼동가능성이 없고, SIMPLE 과 SIMPLE LIFE의 경우에는 혼동가능성이 있다. (iii) 선행상표가 더 이상 후원상표와 같이 인식되지 않을 경우(예: ANT 와 Fantastic), 후원상표에 추가된 요소가 명백히 월등한 경우(예: LIFE 와 Thomson Life), 다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후원상표가 관념적으로 다르게 된 경우(예: New Line 과 Skyline), 선행상표가 식별력이 낮은 수준이거나 기술적인 용어와 가까운 경우에는 공통된 요소가 결합상표에 명백히 지배적이라면 혼동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은 적용하지 않는다.

SUNPLUS 사건³⁸⁾

Sunplus Technology Co. Ltd(원고)는 1957. 6. 15. 지정상품을 제9류(반도체칩, 전자회로, 마그네틱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 등)로 하여 아래의 “로고 + SUNPLUS”의 상표를 근거로 유럽상표로 OHIM에 1996. 4. 1. 자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하였다. 원고의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다.(이하, 편의상 ‘SUNPLUS’ 라 한다)

한편 Benelux 상표청에 “SUN”이라는 상표를 1993. 9. 21.자로 제9류(컴퓨터, 컴퓨터 부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하였다. 원고가 OHIM 이의부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가 있다는 심결을 받았다. OHIM 항고부에서는 SUN 와 SUNPLUS는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OHIM이 ECJ 에 항소하였고, ECJ 는 ”상기 상표들을 호칭과 관념의 관점에서 판단한 바, 혼동가능성은 전 세계적으로(globally) 평가하여야 하고, 외관·칭호·관념의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³⁹⁾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항소 전체는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ECJ는 SUNPLUS는 SUN과 혼동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일본 상표법은 한국 상표법과 대동소이하다. 상표의 유

- 31) *Nina Ricci, S. A .R. L. v. E.T.F. Enters., Inc.*, 889 F.2d 1070, 1072, 12 USPQ 2d 1901, 1902(Fed. Cir. 1989) : 상표의 등록성은 출원인 제품의 특성, 거래의 특정 경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구매자 그룹에 관해 드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출원에 제시된 상품 확인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32) *Basic Regulations(CTMR) : Council Regulations(EC)No.207/2009 of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http://oami.europa.eu> → Legal texts → Trade marks → Regulations.
- 33) *CTMR Article 8(1)(b)*: if because of its identity with, or similarity to, the earlier trade mark and the identity or similarity of the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e trade marks there exists a likelihood of confusion on the part of the public in the territory in which the earlier trade mark is p protected; the likelihood of confusion includes the likelihood of association with the earlier trade mark.
- 34) 유럽상표의 상품 및 서비스업의 유사성의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유럽심사기준 PART 2 CHAPTER 2 B. Similarity of Goods and Services (Final version November 2007)에서 규정하고 있다.
- 35) 유럽심사기준 Opposition Guidelines, Part 2, Chapter 2C 2.1. : Distinctive and dominant components.
- 36) 유럽심사기준 Opposition Guidelines, Part 2, Chapter 2. B. 1.2. : Similarity of goods/services to be interpreted in relation to likelihood of confusion.
- 37) 유럽심사기준 Opposition Guidelines, Part 2, Chapter 2C 5. : Composite signs.
- 38) *C - 21/08 P(2009. 3. 26. 선고)* : In Case T-38/04 Sunplus Technology v. OHIM - Sun Microsystems.(SUNPLUS) 참고로 ECJ의 판결은 C- 21/08이고, CFI 판결은 T/38/04이다.
- 39) Instance examined those marks from the phonetic and conceptional point of view. While the likelihood of confusion must be assessed globally, each visual, phonetic and conceptional component is to be analysed individually.

사판단은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의 각각의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주요한 수요자층 및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결합의 강약의 정도를 고려한다. 그러나 상당히 다른 외관, 칭호 또는 관념이 발생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본의 경우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한 기준과 사례는 일본특허청 상표심사기준(제9판)제4조 제1항 제11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小僧 사건⁴⁰⁾

사건개요

지정상품이 타류에 속하지 않는 식품 및 가미품이고, 등록상표인 '小僧'의 상표권자가 '小僧스시'로 적혀있는 간판과 가게에서 포장·판매되는 스시의 제품판매를 했던 회사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이 본건이다. 피고 회사의 小僧스시는 일반수요자 사이에서 小僧스시 및 小僧스시체인으로 저명하다. 한편, 상표권자의 小僧과 小僧스시는 저명한 지역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판결요지

일본최고재판소는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과 그 그룹의 사용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외관 및 칭호(형식면)에 있어서 일부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 그룹의 상품은 곧 小僧스시체인의 상품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상품의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상표가 외관·칭호·관념(형식상)이 유사하더라도 출처의 혼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유사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론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기준은 비교대상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이 유사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결합된 부분이 일렬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전체로만 인식되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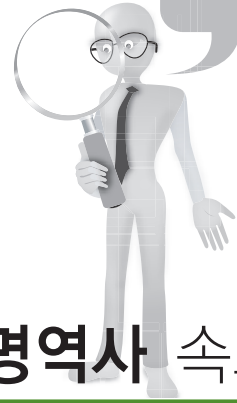
지 여부, 양 상표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요소로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특허청과 대법원은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기준으로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의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가 유사하여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로서 유사한 상표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상표청(OHIM)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는 상표의 유사판단시에 혼동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고, 미국 법원은 혼동가능성과 희석화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CAFC가 2001년에 판결한 Trek 사건에서 미국의 상표침해 사건의 전형적 판단 기준인 혼동가능성과 희석화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小僧사건 판결에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형식상)이 유사하더라도 출처의 혼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외국 법원의 판결은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다른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결합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의 관찰방법이 전체관찰인지 분리관찰인지에 따라서 결합상표의 유사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표를 분리하여 관찰해야 하는지의 여부의 판단은 상표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012. 5 |



김 원 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0) 最高裁判所 平成 6年(工)1102 판결.



후쿠이에의 주전자 뚜껑 구멍

단 한 개의 구멍으로 성공한 발명

발명역사 속으로

일 본의 후쿠이에에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별다른 욕심없이 그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 꼭 이루어 내는 성실한 사람이기도 했다.

어느 날 후쿠이에에는 감기 몸살로 심하게 앓아눕게 되었다. 과로가 겹친 탓이었다.

‘일이 많이 밀려 있는데 이렇게 누워 있다니, 큰일이구나.’

웬만한 병이라면 털고 일어나 출근할 후쿠이에였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다. 침대 옆에는 난로가 있고, 난로 위에서는 물이 담긴 주전자가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방 안이 따뜻해지자 후쿠이에에는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덜컹덜, 덜컹덜”

그의 단잠을 깨우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주전자 속의 물이 끓자 뚜껑이 들썩거리는 소리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증기의 힘은 강해져, 덜컹거리는 소리는 더욱 커졌다.

“방 안이 건조하니 주전자를 올려놓기는 해야 할 텐데, 뚜껑이 덜컹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으니 거참, 난감하군.”

그렇다고 아예 뚜껑을 열어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후쿠이에의 눈에 확 들어오는 물건이 있었다. 송곳이었다.

그는 송곳을 집어 들고 신경질적으로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뚜껑이 들썩거리는 소리가 멎었다. 게다가 구멍을 통해 빠져 나온 수증기는 방 안의 습도 유지에도 안성맞춤이었다.

후쿠이에에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정신없이 잠 속에 빠져들었다. 한참을 늘어지게 잔 다음, 후쿠이에에는 정신을 차리고 주전자 뚜껑을 살펴보았다. 주전자 속의 물은 계속 끓고 있었지만, 덜컹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송곳으로 뚫은 구멍 사이로 수증기가 알맞게 새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모든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는다면 여러모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후쿠이에에는 계속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특허청을 찾은 후쿠이에에는 ‘구멍 뚫린 주전자 뚜껑’의 실용신안 출원을 마쳤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전자 공장은 물론 냄비 공장에서도 후쿠이에를 찾아왔다.

“후쿠이에 씨, 로열티를 지불하겠으니 저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해 주십시오.”

후쿠이에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멍 뚫린 뚜껑의 인기는 높아만 갔고, 후쿠이에의 수입 또한 계속 늘어났다.

생활 속에서 우연히 떠오른 작은 아이디어가 훌륭한 발명이 된 셈이다.





〈차가버섯, Chaga〉

통풍을 치료하는 약초와 특허

통풍(痛風, GOUT)은 사치병, 제왕병으로 알려진 대사성 만성질환으로 혈액 중의 요산의 함량이 높아져서 생기는 병이다. 이 병에 대하여 동양에서는 “바람에 스치기만 해도 통증을 느낀다”라 하여 통풍이라 하고, 서양에서는 “Oh! When I have the Gout, I feel as if I was walking on my eyeball.” 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그 원인과 치료법은 이미 많이 연구된 바 있어서 적절한 조기 치료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

통풍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전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원인을 크게 요산이 과잉 생산되는 경

우와 요산의 배설이 저해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체중 증가는 고 요산혈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주로 중년 이후의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남성은 신장에서의 요산 제거 능력이 감소하지만, 여성은 폐경 이전까지는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요산 제거 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고 요산 상태가 바로 통풍이란 증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고 요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요산의 결정체가 인체 내의 여러 장기에 침착하여 통증, 부종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보통 통풍 증상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는 대개 10~20년 전부터 고 요산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통풍은 그 자체보다는 동반되는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심부전이나 신부전 등이 신체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통풍은 관절염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며, 신체의 어떤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통풍 환자들은 급성 발작을 예방하기 위하여 알콜 특히, 맥주를 금하는 것이 좋고, 고 핵산식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과도한 운동도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로 아래의 특허등록 제10-49247호 “통풍 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의 명세서에 이러한 점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통풍 치료약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아래는 통풍의 치료와 관련되는 생약학적인 여러 가지 연구들이다.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많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허등록 제10-759467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차가버섯 또는 상황버섯으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함유하는 통풍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본 발명은 차가버섯 또는 상황버섯으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함유하는 통풍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차가버섯(*Inonotus Obliquus*) 또는 상황버섯(*Phellinus baumi*)으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이 요산의 형성에 중요한 효소인 산틴 옥시다제를 저해하여 혈중요산을 감소시켜 부작용 없이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며 통풍성관절염 환자에게 많이 발현되는 젤라틴나제 B의 발현을 억제하는 통풍 예방 및 치료 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의약품 및 건강식품의 소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차가는 자작나무에서 자라는 일종의 활물기생버섯이다. 자작나무는 전통적으로 그 하얀 껍질을 약용

하였고, 수액을 받아 먹기도 하며, 자일리톨검으로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발견되는데 해발 1000m 이상의 자작나무과의 자작나무, 거제수나무, 사스레나무 등에서 발견되고 있고 드물게는 참나무류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차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1968년 발표한 소설 ‘암병동’에 의해서이다. 솔제니친은 1950년대 말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추방당한 상태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암병동’은 우즈베키스탄의 암 치료 전문병원에서 암을 성공적으로 치유한 자전적 실화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시베리아 유목민들은 현대에 와서도 피부병에 차가 달인 물로 씻어내는 등 민간요법에 차가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뿔나무상황〉



상황버섯(목질진흙버섯)은 고사목 또는 죽은 나뭇가지에서 발생하는 다년생 버섯으로 뿔나무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하여 상황버섯이라고 부르지만 산뿔나무 외에도 고산지대의 자작나무, 박달나무, 황철나무, 복숭아나무, 산벚나무 등의 활엽수에 발생하며, 분비나무나 가문비나무, 전나무 등의 침엽수에도 발견되고 있다. 실험쥐에서 항종양효과가 인정된 이후 수요가 늘어선 최근에는 많이 재배하고 있다.

특허등록 제10-569244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함초로부터 분리된 3-카페오일-4-다이하이드로카페오일퀴닉산을 함유하는 통풍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본 발명은 3-카페오일-4-다이하이드로카페오일 퀴닉산을 함유하는 통풍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함초(Salicornia herbacea)로부터 분리·정제된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 계열의 카페오일(Caffeoyl) 화합물의 일종인, 3-카페오일-4-다이하이드로카페오일 퀴닉산(3-caffeoyl-4-dihydrocaffeoyl quinic acid, 이하 “CDCQ”라 함)이 요산의 형성에 중요한 효소인 크산틴 옥시다제(Xanthine oxidase)를 저해하여 통풍성 관절염 환자에서 많이 발현되는 젤라틴나제 B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상기 CDCQ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통풍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통통마디, 함초〉



통통마디는 명아주과의 염생식물로서 서남해안 염전 지역 등에서 군생하는 다육질의 1년생 식물로서 가을이 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예전부터 국거리나 가루로 만들어 음식에 첨가하기도 하였고, 갯벌의 미네랄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약초로서 당뇨, 고혈압, 변비 등

에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함초추출물을 이용하여 소금을 만들어 고가에 거래되기도 한다.

특허등록 제10-759468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색 고구마로부터 분리된 자색 색소를 함유하는 통풍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본 발명은 자색 고구마로부터 분리된 자색 색소를 함유하는 통풍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자색 고구마 에탄올 추출물 또는 이로부터 분리된 자색 색소가 요산의 형성에 중요한 효소인 산틴 옥시다제를 저해하여 혈중요산을 감소시켜 부작용 없이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며 통풍성관절염 환자에게 많이 발현되는 젤라틴나제 B의 발현을 억제하는 통풍 예방 및 치료 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의약품 및 건강식품의 소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색 고구마 에탄올 추출물 또는 자색 색소의 새로운 의약용도에 관한 것이다.

특허공개 제10-2010-122308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복분자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통풍 또는 고요산혈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본 발명은 복분자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통풍 또는 고요산혈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동물실험을 통한 혈중요산의 저하 효과를 나타내는 복분자 추출물을 이용한 통풍 또는 고요산혈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복분자 추출물은 통풍 또는 고요산혈증 예방 및 치료용 약제, 기능성 식품 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복분자(覆盆子)는 장미과에 속하는 야생 나무딸기의 생약명으로, 산기슭의 햇빛이 잘 들고 토양이 좋은 곳

〈복분자〉



에서 자라고, 5~6월에 흰색 꽃이 피며 7~8월에 검은색 열매가 익는다. 복분자라는 이름은 요강이 뒤집힐 만큼 소변줄기가 세어진다는 민담에서 유래되었다. 열매에는 폴리페놀을 다량 함유하여 함압, 노화방지, 동맥경화예방, 혈전예방효과 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선운산 일대에 복분자딸기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 고창 지방의 특산물로 복분자주가 유명하다.

특허등록 제10-629624호, 전라북도 고창군, “항염증 활성을 갖는 복분자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본 발명은 복분자 잎 추출물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복분자 잎의 조추출물 및 비극성용매 가용추출물은 BV-2 소신경교세포(microglial cell)에서 NO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며, LPS 유도 iNOS 및 COX-2 유전자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우수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카라기난(Carrageenan) 유도 염증동물모델에서 요산(Uric acid)의 양을 줄임으로써 통풍관련 염증질환을 포함한 각종 염증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복분자〉



다음호에 계속

2012. 5 |



조 식 제 서기관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국

2012년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이란?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심의 시 대상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창업투자회사* 단독신청 또는 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 공동신청

* 신청대상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별도 자격제한은 없으며, 기타 국내 금융기관 및 엔젤투자조합을 포함

**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기술 보유 또는 특허기술 사업화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특허청 지정 9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창업투자회사가 대상기업의 기술 검토를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기술평가보고서를 제공

* 투자결정 시 주된 고려사항인 지재권 경쟁력 분석(특허무효가능성 및 침해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 가능

-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건당 최대 13.5백만 원) (VAT 별도)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접수기간 : 2012. 2. 15부터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평가비용 견적서(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사업공고 첨부양식)를 작성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출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이동준 주임(Tel: 02-3459-2943, E-mail: djlee@kipa.org)

주한중 전문위원(Tel: 02-3459-2945, E-mail: hjju@kipa.org)

※ 상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사업공고란 참조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_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KIPO NEWS _ 특허청 소식

여기서 잠깐 _ 독자마당

KIPA NEWS _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발명만화 _ 몰래발명이야기 - 립스틱

건강하게 삽시다 _ 건강하고 싶다면 장을 청소하자

여기서 잠깐 _ 문화산책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 Oracle社와 Google社 간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심리 개시

지난 4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은 Oracle社가 Google社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심리를 개시하였다.

2010년 8월 Oracle社는 총 132개 항목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Google社를 제소하였으며, 그 이후 양측은 분쟁조정을 위해 오랜 기간 협상하였다. 그러나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은 동 소송의 심리를 개시했으며, 그 소송결과는 향후 삼성전자, HTC社, Motorola社 등과 같은 관련 기업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Oracle社와 Google社가 분쟁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특허 침해의 범위와 손해배상의 규모에 관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본래 Sun Microsystems社가 갖고 있던 「자바」 관련 특허들은 2010년에 Oracle社가 Sun Microsystems社를 74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Oracle社의 소유가 되었다. Oracle社는 2010년 8월에 Google社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가 「자바」 관련 특허들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총 61억 달러의 소송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Google社는 「안

드로이드」가 「자바」 관련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Oracle社가 주장하는 특허침해의 기준이 잘못되었고 손해배상의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반박하였다.

Google社는 IBM社의 특허 200여 개를 구입하고 Motorola社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Oracle社와의 특허침해소송에 대비하였다. Google社는 Oracle社를 상대로 2개 특허에 대해 28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제시하였으나 협상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3월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Oracle社가 주장한 특허침해 항목들을 검토하였으며, Oracle社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Oracle社와 Google社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Oracle社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61억 달러에서 11억 6천만 달러까지 감소하였다. Oracle社는 Google社로부터 약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news.cnet.com

미국 하원 정보특별위원회, 「2011년 사이버 정보공유 및 보호에 관한 법」 표결 예정

지난 4월 23일, 미국 하원의 정보특별위원회(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는 「2011년 사이버 정보 공유 및 보호에 관한 법(Cyber Intelligence Sharing and Protection Act, CISPA)」을 표결할 예정이다.

CISPA의 목적은 사이버 보안 및 국가 안보 부문에서 민간기업과 연방정부 간의 통신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보특별위원회는 연방정부가 기밀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식별해 네트워크 공격을 막고 있으나, 이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CISPA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Rebecca Jeschke 디지털 저작권 분석가는 CISPA가 공유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미국자유인권협회(ACLU)의 Michelle Richardson도 CISPA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CISPA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ISPA는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방해 및 파괴, 민간정보와 국가정보, 지식재산의 절도 및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관련 정보를 공유 가능한 데이터로서 규정하고 있다. CISPA를 공동 발의한

Dutch Rappersberger 공화당의원은 CISPA가 지식재산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Facebook사는 CISPA가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CISPA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출처 <http://www.latimes.com>



일본 특허청, 포르투갈 산업 재산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 합의

지난 4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포르투갈 산업재산청(INPI)과 4월 18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시행기간은 2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포르투갈과의 합의를 포함하면 일본은 총 22개국·기관과

PPH를 체결한 것이 된다.

이번 PPH는 JPO 또는 INPI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출원과 JPO가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특허성을 가진다는 견해를 표시한 특허협력조약(PCT)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 기업은 이번 PPH를 이용함으로써 조기심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포르투갈에서도 신속한 특허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업들이 포르투갈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전개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출처 <http://www.meti.go.jp>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구원, 특허분쟁 대비 모의연수 확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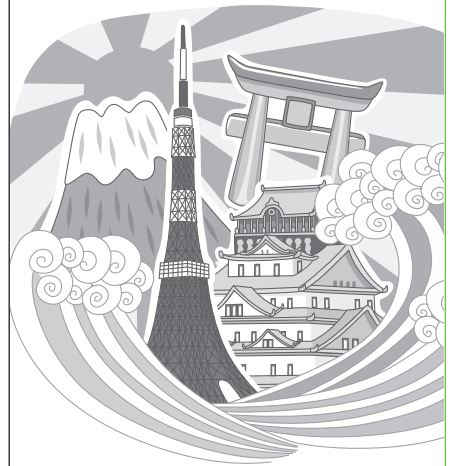
지난 4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공업소유권정보연구원(INPIT)은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모의연수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INPIT는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다른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는 경우를 대비한 「특허침해경고 모의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모의연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필요한 교섭노하우 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모의연수는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3대 도시에서 개최되었으나, 2012년에는 경제산업국, 상공회, 청년 회의소 등의 요청에 따라 경영자들이 각지에서 모의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INPIT가 연수 개최지역과 일정을 정했으나, 2012년에는 상공회나 신진 경영자들이 가입한 청년 회의소가 연수를 주최하게 되며, 경영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nikkan.co.jp>



중국 인민대표, 통일된 '지식재산권보호기본법' 제정 건의

지난 4월 9일, 중국 예첸(叶倩) 인민대표는 제11기 인민대표대회에서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통일된

세계는 지금

「지식재산권보호기본법(知识产权保护基本法)」 제정을 건의하였다.

예천 인민대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은 지식재산권 관련법을 마련하였으며 국무원 역시 10여 개의 관련 행정법규를 발표했으나 법 및 행정법규 사이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들이 존재함
-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중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 규정들이 중복된 경우가 많아 입법자원의 낭비가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 법률들이 모두 원론적이어서 인민법원 및 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처리가 불리함
- 중국은 지식재산권 관리·감독과 보호기관이 중복·중첩되고, 관련 기관들은 예산부족으로 소극적 태도를 취해 지식재산권 보호범위를 모두 소화할 수 없음

예천 인민대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함.

- 중국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이 많아 현재의 법률 및 규정만으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한국과 일본은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의 지식재산권전략 추진과 관련 조치

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중국도 각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단독 입법형식을 취하는 동시에 사회, 경제, 법률 발전에 적합한 「지식재산권보호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출처 <http://www.ipr.gov.cn>

중국 국가지식재산권, 상표법 개정 계획 발표

지난 4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은 상표법 개정안의 주요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상표법 개정안은 완성된 상태는 아니며 의견수렴 및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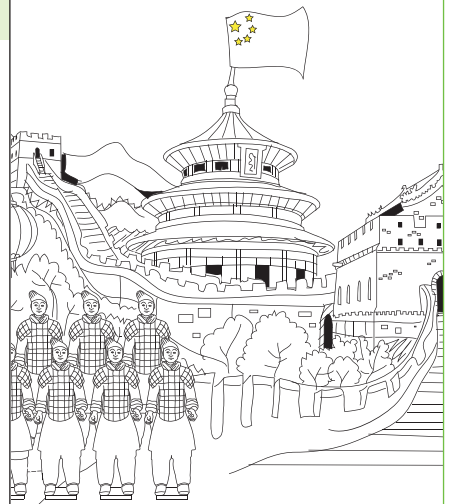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 위즈화(吕志华) 부국장은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상표등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이의신청 자격과 사유에 대해 일정 제한을 두고 선권리자와 이해관계자 등만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금을 상향조정하였고, 상표사용 개념을 명확히 하며, 법정손해배상금을 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새로운 상표유형을 추가하고, 단일색 채상표를 추가하며, 이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표식별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http://www.ipr.gov.cn>



유럽디지털권리단체, 위조품의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 관련 G8의 제안 소개

지난 4월 15일, 유럽디지털권리(European Digital Rights)단체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 회담의 ACTA 관련 제안을 소개하였다.

유럽디지털권리단체의 Joe Mc Namee 사무처장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던 G8 외무장관들은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비공식 문서(Non-

Paper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를 마련하였다. 비공식문서에는 3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즉, ① 위조 및 해적행위 척결을 위한 집행활동 강화를 담은 G8 이니셔티브 (통합경고시스템, 엄격한 처벌 및 국경 지대에서 압수 등), ②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최적사례 지원에 관한 G8 이니셔티브, 그리고 ③의 약품의 안정성 증대를 위한 G8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그러나 이 비공식 문서는 G8 외무장관들의 공식 선언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EU는 ACTA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아직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오는 6월 EU 의회 총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EU 의회의 ACTA 선도위원회(lead committee)인 국제무역위원회 David Martin 특별조사위원은 EU 의회가 ACTA 승인을 거부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사회당과 민주당(Socialists and Democrats, S&D)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ACTA를 반대하는 EU의 시민단체들은 EU 의회가 ACTA 승인을 거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EU에서 ACTA 승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패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전

망이다.

EU 의회 법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인 프랑스 보수당 Marielle Gallod 의원은 ACTA 가결을 제안하고 있다. EU 의회의 모든 위원회는 ACTA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에 각각 표결을 해야 하며 총회의 표결은 오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

출처 <http://www.ip-watch.org>

영국 지식재산청, 중소기업 지원 관련 보고서 발표

지난 4월 3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담은 보고서인 「아이디어에서 성장까지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가치 획득 지원(From ideas to growth : Helping SMEs get value from their IP)」을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지식, 노하우, 지원에 접근성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 중 하나는 2012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Business in You」 캠페인이다.

또한 영국 기업청(Companies House)과 함께 중소기업 무료 지원 행

사를 시작하여 법인설립 절차 및 기업청이 제공한 톨의 사용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UKIPO는 보다 상세한 계획을 위해 향후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및 비즈니스 자문관, 관련 단체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ipo.gov.uk>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KIPO NEWS

특허청-국제협력단(KOICA)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과 한국국제협력단은 지난 4월 6일 개도국의 지식재산분야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식재산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특허청과 무상원조사업 전담 시행 기관인 국제협력단이 협력하여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특허청과 국제협력단은 개도국의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지원, 특허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특허 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브랜드 지원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최빈국과 개도국의 가난한 이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순하지만 효용이 큰 기술을 말한다.



특허청 지원 발명·특허 특성화고 신규선정

특허청은 발명·특허 교육과 결합한 기술교육으로 발명·특허에 강한 창의적인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고 3개 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08년부터 삼일공업고(경기 수원), 대덕전자기계고(대전), 경남항공고(경남 고성), 대광발명과학고(부산) 4개교를 발명·특허 특성화고로 지정·운영하여 2012년 2월까지 1,74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들 졸업생은 발명·특허 교육과 결합한 기술교육으로 발명·특허에 강한 기술인재로 양성되어 학교별 평균 취업률이 2008년 11%에서 2011년 47%로 상승하는 등 발명·특허 특성화 교육으로 기업이 선호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어졌다.

이에 특허청은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을 확대하여 3개 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12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발명·특허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실습 기자재 구입비, 사업 관리비 등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특허청이 지원한다.

특허청, 중국 지방정부와 지재권 교류·협력 강화

특허청은 지난 4월 10일(화) 중국 장쑤성(江蘇省)의 성도(省都)인 난징(南京)에서 허첸(何權) 장쑤성 부성장(副省長) 등 장쑤성인민정부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특허청은 그동안 중국 중앙정부의 지재권 주무부처인 “국가지식재산권국(國家知識產權局)”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과 지재권 분야의 포괄적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중국내 지재권 보호에 관한 실질적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인민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장쑤성은 삼성전자·LG화학·포스코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수출액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의 35%를 점하고 있는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하여, 우리로서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장쑤성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장쑤성 정부 또한 양호한 지재권 보호환경 조성을 통하여 한국기

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분쟁해결 더 빨라진다

앞으로는 특허분쟁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법원이나 무역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허분쟁 관련 심판사건을 신속심판¹⁾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여 심판청구 후 4개월 내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나 특허침해소송 등과 같은 특허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이나, 오스람과 삼성, LG와의 LED조명 특허소송

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전방위로 특허공세를 펼치는 이른바 '특허전쟁' 시대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손해배상청구, 가처분결정)은 일반 민사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며, 이와는 별도로 특허심판원에서는 실시자의 제품이 특허권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무효심판이 이루어진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특허침해소송이 계류 중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하여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최근 특허침해여부의 전제조건인 특허의 무효여부가 주요 쟁점²⁾이 되면서, 무효심판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일 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도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하여 심판청구 후 4개월 내 처리하도록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9월에 판정한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특허침해 불공정무역행위³⁾ 조사사건에서도 특허권의 무효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심판사건도 사안에 따라 신속심판 또는 우선 심판으로 지정하여 4개월 또는 6개월 내 처리하도록 하

였다.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청구 후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9개월이 소요되나, 신속심판 또는 우선 심판으로 지정되면 5개월에서 3개월가량의 기간이 단축된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권, 상표권의 무효여부가 조속히 판가름 나, 일반 민사법원이나 무역위원회에서의 무효판단에 대한 부담 및 심리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 1) 특허심판원은 심판사건을 처리순위에 따라 신속심판, 우선심판, 일반심판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음
- 2)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판결에서는 특허권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 3) 불공정무역행위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로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나 원산지표시위반행위 등을 말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되면 수출, 수입, 판매, 제조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정부 R&D, 첫 단추 제대로 끼우기!!

특허청은 R&D 과제발굴 단계부터 특허 분석을 통해 원천·핵심특허 선점이 가능한 미래 유망 기술을 R&D 부처에 제공하여 강한 특허 창출형으로 정부 R&D

KIPO NEWS

사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 성과는 양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여 활용 실적이 낮은 편이다.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천·핵심특허 선점이 가능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R&D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특허분석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부터 특허관점에서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R&D 과제로 제공하는 사업을 바이오, 이동통신, 로봇의 3대 산업분야*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3대 산업분야 : 바이오(지경부, 복지부, 국토부), 이동통신(지경부, 방통위), 로봇(지경부)

특허관점의 유망 R&D 과제 선정 사업은 정부 R&D라는 옷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일에 비견될 수 있다. 즉, 정부 R&D 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동 사업이 집중 투자방향을 제시하여 그 길을 안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방식으로 R&D 과제를 도출하여 특허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특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특허 창

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 R&D 과제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30일 그 시작을 알리는 착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특허청 등의 실무자, R&D 기획전문가, 산·학·연 기술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에 대한 세부 진행방향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동 사업은 3월~10월에 걸쳐서 진행된다.

상품화 및 지재권교육이 있는 일석이조 디자인공모전 개최

상품화에 따라 로열티가 지급되며, 수준 높은 지재권교육이 이루어지는 디자인공모전이 개최된다.

특허청·한국무역협회·매일경제는 참신한 디자인을 기업에 공급하고 디자인권에 대한 디자이너와 기업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2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이하 공모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출제, 심사, 시상, 라이선스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에 기업이 참여하여 상품화를 지원하며, '기업출제부문'과 '자유출제부문'으로 나뉘어 출품을 받는다. 특히, 올해에는 디자인전략

부문을 신설하여 애플과 삼성의 분쟁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디자인권의 활용방법과 방어전략에 대해 공모한다. (기업의 참여문의는 D2B 디자인페어 사무국 02-928-0582)

또한, 1차 입상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D2B IPSS(Intellectual Property Summer School)를 7. 10(화) ~ 13(금)까지 제주 피닉스 아일랜드에서 개최하여 디자인권 등 지재권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지재권에 강한 디자이너를 양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기업 담당자도 참여하여 각 기업의 입상작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하여 기업현실에 맞춘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상품화를 도모하게 되는데 지식재산권 유통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수상작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과정을 돕게 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18세 이상 2명 이내의 팀 또는 개인이며, 참가 희망자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1차 작품제출을 하면 되고, 최종 시상식은 올 11월 29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제공 특허청



발명특허를 보신 후 가장 좋았던 내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적어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더 나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에 게재되신 분에게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독자의견을 적어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추천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서)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보내실 곳
eldaah7@kipa.org

QUIZ

1. 정보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만을 소셜네트워크상에 올리는 누리꾼을 지칭하는 신조어는?
2. 미국과 유럽이 안보와 경제지원 등 모든 현안과 인권 문제를 연결시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과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3. 일반적으로 80:20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래의 뜻은 '사회전체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진다'는 법칙은?

※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천을 통해 「발명특허」 추천도서에 소개된 책을 책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의견

- ▶ 임주영 독자 _ 칼럼 「중국에서의 지재권 소송 실전 전략」을 읽었는데, 세계적으로 특허소송이 치열한 요즘, 우리 기업들이 지금부터 중국 소송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 이지영 독자 _ 저는 「발명역사 속으로」를 즐겨 읽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발명의 탄생 비화를 알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번 에 처음 게재된 발명만화도 너무 재미있어서 볼거리가 많아 더욱 좋습니다.
- ▶ 임경희 독자 _ 비시각적인 상표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읽으니 우리가 특허에 관해 너무 무관심했던게 분명하네요. 우리 일상을 잘 돌아보면 특허와 우리 생활이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만화지면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4월호 퀴즈 정답

1. 블랙컨슈머
2. 새만금
3. 아담스미스

퀴즈 정답자

- 임주영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이지영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임경희 대전시 대덕구 계족로 505번길

KIPA NEWS

캠퍼스 발명왕' 에 도전하세요!

대학(원)생이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명품으로 제작해보고, 이러한 제품이 특허로 보호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2 대학 창의발명대회(이하 대회)'가 지난 4월 5일부터 시작되었다.

특허청·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 대회는, 현재 '발명공모', '발명연구', '발명특허' 등 3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 중에 있다. 먼저 발명공모부문은 산학협동형 발명 프로그램으로서, 참여기업이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나 기술적 과제를 제시하면 대학생이 이에 대한 발명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중앙방수기업주식회사, (주)한경희생활과학, LS산전이 협찬기업으로 참여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모과제로 제시했다. 협찬기업에서는 공모과제에 대한 참신한 해결방안이 제시될 경우 이를 제품생산에 활용할 예정이다.

발명연구부문은 제출된 미완성 아이디어를 발명품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과 결과를, 발명특허부문은 졸업작품이나 논문 등으로 이미 완성된 발명을 특허출원서 형태로 작성하고 시작품으로 구현하여 그 우수성을 겨루고 있다.

심사는 아이디어의 구체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이 서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종심사는 발표심사로 진행되어 발명의 완성도, 사업화가능성, 발표력 등을 평가하고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심사의 공정성, 권리화·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회추천교수, 변리사, 벤처기업가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시상식은 올 12월 6일에 열릴 예정이며 우수발명에 대해서는 대상(국무총리상) 1팀 등 총 38팀을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발명의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도교수상과 단체부문의 발명동아리상도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국제발명전 출품 참여를 지원하고, 우수상 이상은 필요한 경우 국내출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청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우수발명품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대학(원)생이면 전공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발명연구부문 참가 희망자는 5월 22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명특허부문과 발명공모부문의 신청접수는 8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inventkorea.or.kr) 또는 대회 사무국인 우리회(발명진흥팀, 02-3459-2794)로 문의하면 된다.

제네바국제발명전에서 금상 7건 등 총 16건 수상

우리회는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현지시각)까지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40회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이하 제네바 국제발명전)에서 금상 7건, 은상 3건, 특별상 6건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네바국제발명전 금상은 (주)한백시스템(원유석)의 「시각장애인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의 안전대기장치」, (주)에이치엔씨(임재영)의 「의류 관리기」, (주)푸드에너지(이관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주)엠에프테크(오동진)의 「전기집진장치 및 전기집진 방법」, POSTEC(유희천 교수)의 「PC기반 시야 자가진단 시선 고정 방법」, 코모코 엔지니어링(최명수)의 「컵 세척기」, 미림사(임성조)의 「이동 가능한 지압체를 갖는 신발용 바닥재」 등이다.

또 은상에는 터치슈즈닷컴(황종오)의 「신발끈의 결속장치」, 네오비(이팔형)의 「칫솔」, 원라인션(김명숙)의 「구구구포 인삼 추출물과 천연 한방 추출물을 함유하는 탈모 방지용 화장료 조성물」이 수상했다.

특히, (주)한백시스템(원유석)은 대만발명가협회 특별상, (주)에이치엔씨(임재영)는 타이페시 특별상, (주)푸드에너지(이관희)는 제네바시 특별상 및 말레이시아 과학자협회 특별상, POSTECH(유희천 교수)은 러시아 교육과학부 특별상, 미림사(임성조)는 이란 발명가협회 특별상을 수상하여 금상과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경이사를 맞았다.

제네바국제발명전은 세계적 권위의 국제발명전으로,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세계 46개국에서 총 1,000여 점의 발명품이 출품됐으며 올해 40회째를 맞은 세계 최대의 발명전이다.



우리회 등 5개 기관, 국가 지식재산 인재양성 위해 손잡아

○ 리회는 지난 4월 5일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지식재산 교육의 공급 및 수요를 담당하는 4개 기관과 국가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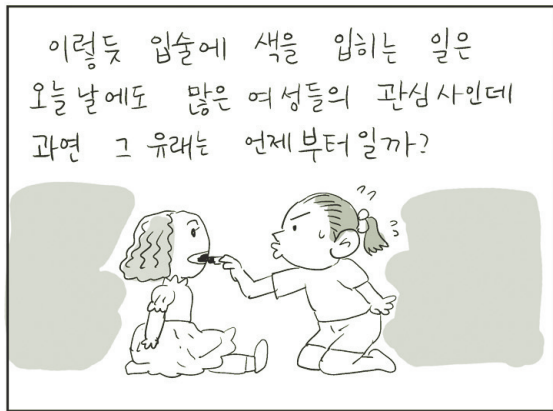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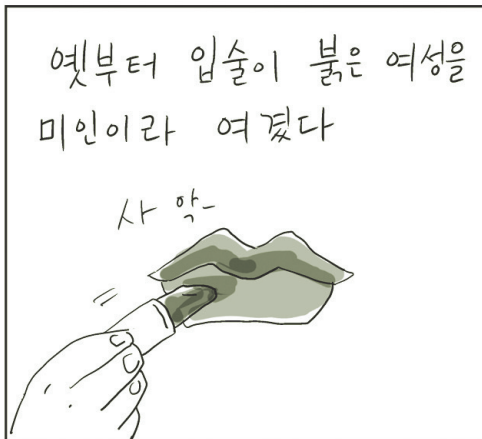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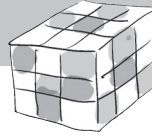
이번 협약식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국내 대표적 지식재산 교육 공급기관인 우리회를 비롯,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산업계 수요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인력교육원,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회 등 5개 기관은, 지식재산 인재양성 종합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지식재산 교육수요 발굴 및 활용, 국내외 지식재산 인재양성 동향조사 및 정책추진 방안 연구, 산업계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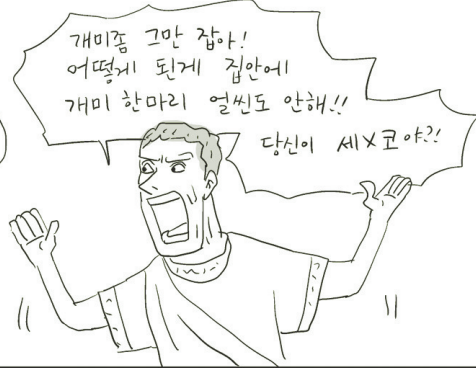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라는 공동인식으로 마련된 것"이며 "지식재산 교육의 수요 및 공급기관 간 긴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래 발명 이야기 _ 립스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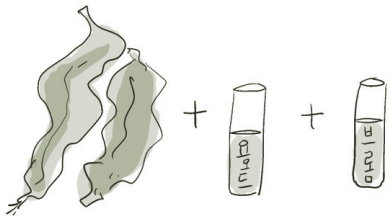
글·그림 김민재



클레오파트라라는 개미와 심홍색 딱정벌레를 분쇄하여 혼합한후 입술에 발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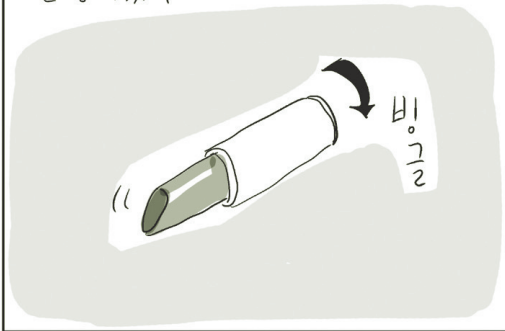
한편 기원전 1400년 이후 이집트에서는 늪초에서 추출한 빨간 염료를 요오드와 유독한 브롬 혼합물을 섞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소위 립스틱은 자칫 사망으로 가지 이어지기도 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립스틱은 1915년 모리스레비에 의해 발명되었다.



여성의 기분을 그때 그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주며 보는 남성들의 마음도 설레게 만드는 매직스틱. 앞으로도 짝퉁 여성들과 함께하라 ~!!



건강하고 싶다면 장을 청소하자

화창한 봄이 되면서 주말마다 도로정체 현상이 심각하다. 그럴수록 갖길 주행,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방뇨까지 각종 폐단이 속출하는데, 이 같은 도로의 기능은 우리 몸과 비슷하다. 배설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장이 막히면 도로 위에서의 각종 폐단처럼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는 건강의 기본이 되는 장(腸)을 알아보고,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질의 음식이나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잘 배설하는 일인데, 배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배설을 담당하는 장 건강의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최근 늘고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부족, 만성 스트레스가 그 원인으로 작게는 변비, 잦은 설사에서부터 대장암과 같은 대장질환까지 현대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과 숙변이 쌓이게 되면서 유해독소가 발생하여 피부 트러블, 노화, 비만, 각종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실제로 한의원을 내원

김소형
한의학 박사





하는 환자의 체질이나 식습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독소가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몸 속 정화가 건강의 기본

일반적으로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약 12~18시간에 걸쳐 영양분이 흡수되고 나머지는 장의 연동운동을 통해 변의 형태로 항문으로 빠져나간다. 장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음식물이 장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8~24시간 정도로, 정상적인 배변횟수는 1일 1회부터 주3회까지다. 그러나 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경우 변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고, 수분이 빠져나가 변이 굳어지면서 변비가 된다. 오랫동안 쌓인 변은 장 속에서 이상발효현상을 일으켜, 독소를 생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 독소가 문제다. 장 속에 생긴 독소는 장벽을 통해 혈액 속으로 흡수되고, 혈액을 타고 우리 몸 곳곳을 돌면서 혈액을 탁하게 만들면서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얼굴에 여드름이나 기미,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아침·저녁으로 몸이 붓거나 손발이 차고 저린 증상이 생기거나 비만, 변비·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한다.

건강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장기인 장, 어떻게 하면 건

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 우선 매일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자. 장에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잘 배출되지 않고 숙변으로 남거나 변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통 하루 7잔 이상, 1500cc 이상은 마시는 게 좋다. 더불어 물은 몸 속에 쌓인 불필요한 노폐물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며, 인체의 대사작용을 높여주고 혈액과 조직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게다가 체내의 열을 발산시켜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처럼 물은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에 도움을 주므로 충분히 마시도록 한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한다. 식이섬유는 기본적으로 수분흡수 기능이 뛰어나 변의 양을 불리고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노폐물을 빨리 배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와 함께 장내의 묵은 변과 유해물을 흡착해 함께 배출시켜 장을 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혈액을 끈적끈적하고 탁하게 만드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착, 배출하여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몸 속에 쌓이지 않도록 하여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식이섬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각종 곡물, 과일, 채소, 해조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유산균 공급도 중요하다. 비피더스와 같은 장내 유산균은 유해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정장작용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장이 깨끗해지고 튼튼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체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면역증강과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장을 튼튼하게 하는 생활 속 비법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 외에 간단한 생활 속 마사지를 통해서도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복부 마사지가 있는데, 두 손을 비벼서 열을 낸 뒤 오른쪽 아랫배에서 시계방향으로 즉, 장 속에서 대변이 진행되는 방향을 따라 주먹을 쥐 상태로 이동해가며 마사지 해준다. 명치에서 양쪽 옆구리 방향으로 손가락을 이용해 마사지 하듯 훑어 주는 것도 좋다.

뜸이 지압을 해주는 것도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배꼽 좌우 양쪽으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떨어진 천추혈은 소장과 대장 등 소화기계와 관련된 경혈로, 이 부위를 수시로 자극하면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더불어 시간이 날 때마다 항문 조이기를 해보자. 이 경우 아랫배 근력이 강화되어 생식, 배설기가 튼튼해져 소변 배설 장애나 변비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 변비가 심할 경우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2~3일 내로 쾌변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식 호흡이 있다. 복식 호흡이란 말 그대로 배로 하는 호흡이다. 방법은 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쉬어서 배까지 내려가게 한 후 밖으로 다시 내쉬는데, 숨을 들이 마실 때 배가 나오게 하고 내설 때 들어가게 하면 된다. 복식 호흡은 대장에 자극을 주고 연동 운동을 활성화하여 대변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배의 근육이 단련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까지 있어 스트레스로 인한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건강TIP> 장에서 발생한 유해 독소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 구강 내 구취와 몸의 체취를 만들어낸다.
- ▶ 피부질환으로 여드름과 기미를 일으킨다.
- ▶ 소화불량, 두통, 요통 등을 일으킨다.
- ▶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등을 초래하며 남성은 무기력증,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된다.
- ▶ 고혈압, 비만, 당뇨, 지방간, 간염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
- ▶ 노화를 촉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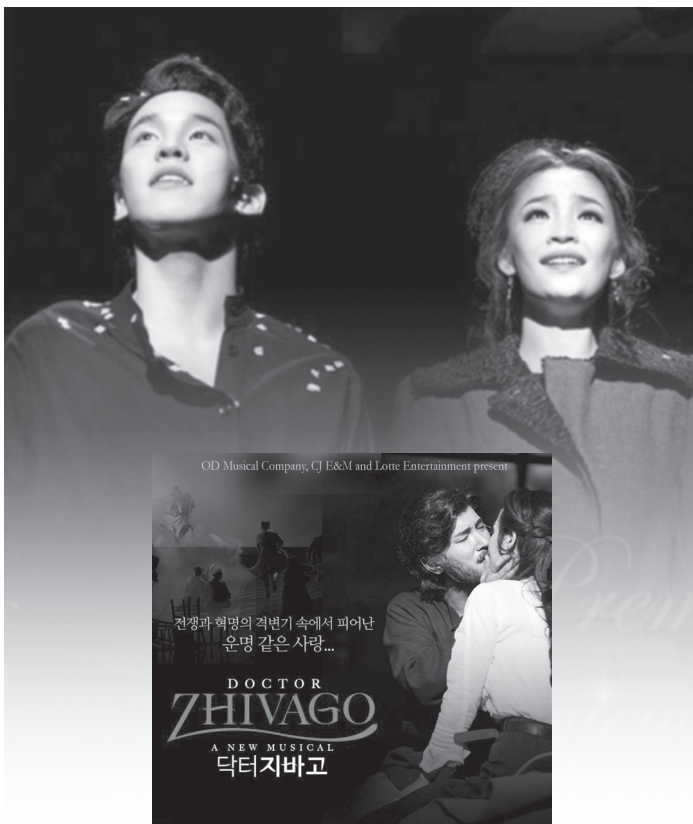
2012. 5 |



뮤지컬 - 닥터지바고

2012. 1. 27 ~ 2012. 6. 3

공연이 끝난 한참 뒤에도 가슴 속 진한 여운을 선사하는 세기의 러브스토리
2012년 아시아 프리미어에서 최고의 배우·완성도 높은 무대와 함께 합니다.



공연장소 : 샤롯데씨어터
공연기간 : 2012. 1. 27 ~ 2012. 6. 3
관람시간 : 160분
기획사 : (주)오디뮤지컬컴퍼니

뮤지컬 닥터지바고의 원작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동명장편소설로 러시아의 혁명과 전쟁 속에서 피어난 로맨스 대서사극이며, 출판 이듬해에 노벨 문학상 수상작(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작가가 수상을 거부한다)에 선정된 작품이기도 하다.

이후 1965년 데이비드 린(David Lean)에 의해 영화로 재탄생되어 1966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개 부문을 수상하였고, 역대 흥행순위,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미국영화협회 선정 100선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영화 속 유리지바고 역을 맡았던 오마샤리프는 이 영화를 통해 세기를 대표하는 배우로 거듭났으며, 지금까지 역사상 8번째로 큰 수익을 남긴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원작이 자기는 웅장하고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뮤지컬로 실현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크리에이티브팀과 각국의 프로듀서들은 다양한 시도를 거쳐 호주에서 성황리에 월드 프리미어를 성공시켰고, 2012년, 소설과 영화의 감동이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의 무대에서 이어지고 있다.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eldaah7@kipa.org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회원동향」란에 실을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eldaah7@kipa.org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전략기획팀 TEL (02)3459-2726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격	가격	비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확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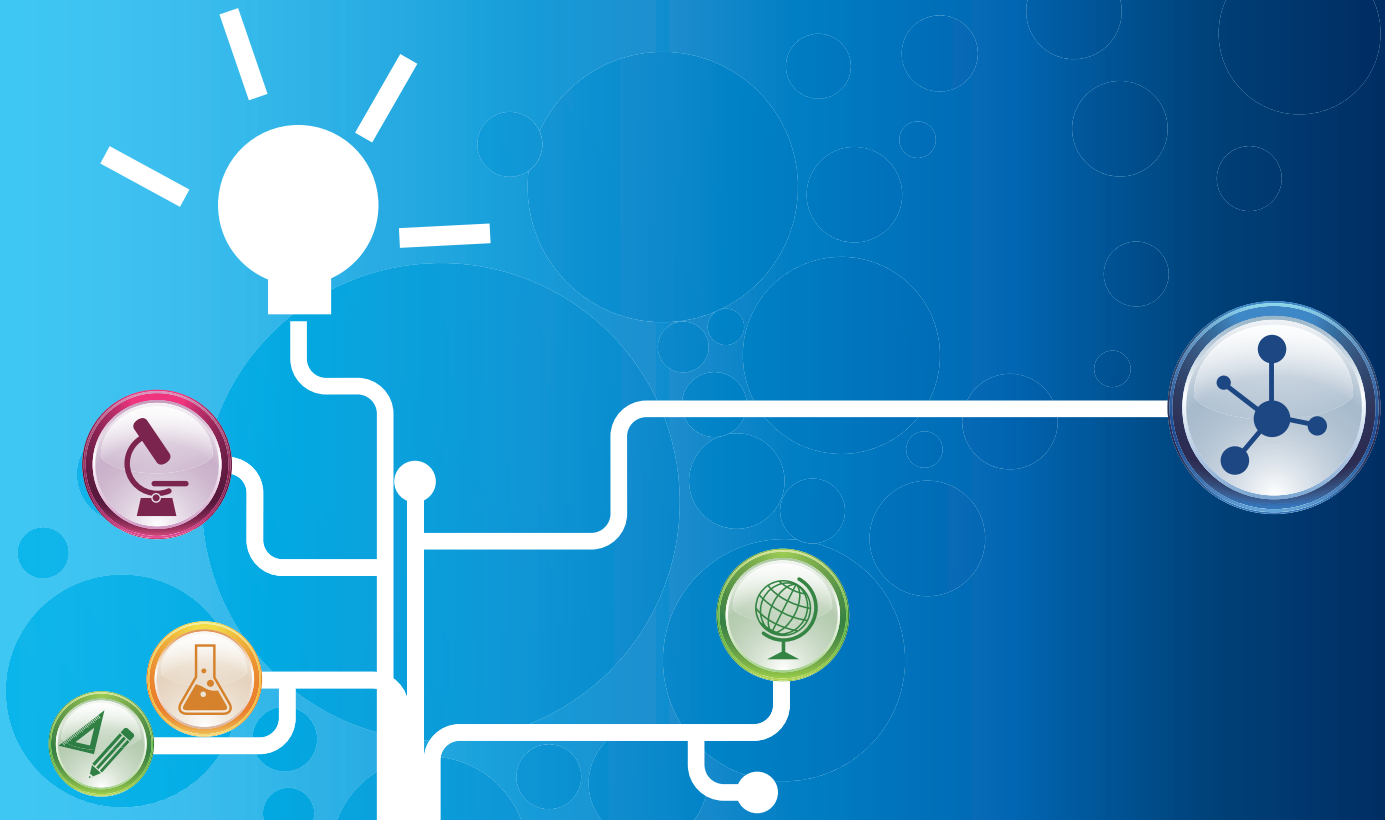
우리회 지회 안내

지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현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1	063-471-1284

편집 : 전략기획팀 김민국 (Tel. 02-3459-2726, Fax. 02-3459-2729)

발명과 특허,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5월은 발명의 달



국민들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붐조성을 위해
매년 5월을 발명의 달로 지정, 기념하고 있습니다.

발명과 특허,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제47회 발명의 날

2012.5.18 (금)

장소 : 63시티 그랜드 볼룸 (2F)



* 발명의 날

- 1441년(세종23년) 장영실이 세계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후 1442년 5월 19일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여 1957년에 제정된 날입니다.